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Child Protection Service Manual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안내

본 매뉴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책임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4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매뉴얼 활용범위

- 주 사용자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미배치 지역은 시군구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 참고 사용자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아동복지(사회복지) 담당
공공부문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민간 아동복지시설 업무담당자, 아동복지 관계자 등

● 매뉴얼 활용방법

- 매뉴얼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업무 가이드라인
- 매뉴얼 지침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관련 담당자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민간 담당자들은 아동보호 흐름과 절차를 인지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업함

CONTENTS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배경	3
1. 현황 및 문제점	3
2. 그 간의 추진 경과	3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4
II. 서비스 주요대상(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5
1. 아동의 개념	5
2.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5
3. 보호자의 의미	5
III.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6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6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6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7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7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7
IV. 아동보호서비스 주요내용	9
1. 개요	9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11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5
4.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전후 조치 사항	18
V.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38
1. 아동 학대 의심사례 및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38
2. 빈곤 등 위기가구 내 아동	39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I. 상담·조사·사정	43
1. 개요	43
2. 수행주체	43
3. 수행시기	44
4. 수행방법	44
II. 보호계획 및 결정	49
1. 개요	49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49
3. 사례회의 운영	52
4. 보호조치 결정(아동복지심의위원회)	53
III. 보호조치	56
1. 개요	56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제공	56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58
IV. 종결	61
1. 개요	61
V. 사후관리	67
1. 개요	67
2. 자립지원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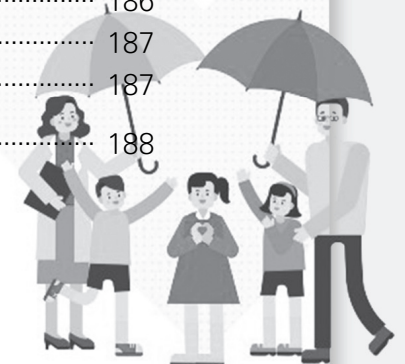
CONTENTS

제3부 부록

I.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73
[서식 1] 접수상담지	75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79
[서식 3] 욕구조사표	81
[서식 4] 일시보호 의뢰서	93
[서식 5] 친부모 상황 점검표	95
[서식 6] 아동 상황 점검표	103
[서식 7] 아동카드	109
[서식 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113
[서식 9] 양육 상황 점검	117
[서식 10] 가정복귀 점검표	121
[서식 11]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128
[서식 12] 종결심사서	131
[서식 13] 양육계획서(보호자용)	134
[서식 1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137
[서식 15] 보호조치 결정(변경)통지서	139
[서식 1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141
[서식 17] 아동 가정복귀신청서	142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143
[서식 19]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145
[서식 20] 범죄경력조회요청서	146
[서식 21]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47
[서식 2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148
[서식 23]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149
[서식 24] 가정위탁보호동의서	150
[서식 25] 가정위탁가족동의서	151
[서식 2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152
[서식 27]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53
[서식 28]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154
[서식 29]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155



[서식 30]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156
[서식 31] 아동입원(입소) 의뢰서	157
[서식 32]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158
[서식 33] 입양동의서	159
[서식 34]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160
[서식 35] 입양동의 철회서	161
[서식 3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162
[서식 37]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서	163
[서식 38] 신상카드	164
[서식 39] 신상카드	166
[서식 40]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168
[서식 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69
[서식 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70
[서식 43] 피해아동보호계획서	171
[서식 44]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동의서	174
[서식 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175
[서식 46] 가정환경조사서(아보전용)	176
[서식 4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79
II. 아동위원 제도운영	180
1. 목적	180
2. 운영 방안	180
II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184
가. 개요	184
나. 주요 기능	184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184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186
마. 소위원회 운영	186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	187
사. 기타 사항	187
[붙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188



CONTENTS

표 목 차

〈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0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31
〈표 3〉 아동보호수행 인력별 역할	38
〈표 4〉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 기준	39
〈표 5〉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준	40
〈표 6〉 사정 시 고려사항	48
〈표 7〉 사례회의 종류	53
〈표 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55
〈표 9〉 가정위탁 신청서류	57
〈표 10〉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58
〈표 11〉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60
〈표 12〉 아동 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60
〈표 13〉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70

그림목차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6
〈그림 2〉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17



제 1 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 시군구당 보호대상아동(평균 196명) 담당 인력은 평균 1.2명('19.4월)
-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 후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지속되고, 보호자 의뢰가 없는 경우 아동 상황 변경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 및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부재

2. 그 간의 추진 경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16.3. 개정, '18.3. 시행)
 - ※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상황 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2017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제정 및 지자체 배포('17.6.)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발굴-접수-조사-사정-보호-사후관리' 등 지자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아동보호 각 단계별 매뉴얼
-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반영('17.7.)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281명) 시·군·구(176개) 배치('20.10.)
※ 아동학대전담공무원(290명) 시·군·구(118개) 배치('20.10.)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 구축
 -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 (개별보호·관리계획)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종결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연령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보호조치)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
 -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귀가 적절한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
-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22년)
 - (통합정보시스템) 아동에 대해 지자체-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
 - (원가정 복귀 지원) 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통해 아동이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아동-부모 간 만남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도입



Ⅱ. 서비스 주요 대상(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1. 아동의 개념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 보호 필요성, 아동 욕구, 서비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보호대상 연령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2.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예시)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험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3. 보호자의 의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부모 등 보호자 가운데 가족과 관계가 있는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사례의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함.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 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 / '18.3.23. 시행)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3월)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1. 개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원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18.3.23.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17.10.24.>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가 원가정 보호(복귀)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 등 필요한 조치 수행

나 연고자 대리 양육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다 가정 위탁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주요 내용 : 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 등에게 가정위탁수행
 -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 ※ 일반가정위탁 : 대리양육 이외 가정위탁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 ※ 전문가정위탁 : 만2세 이하 아동,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대상의 가정위탁
 - ※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참고

라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 주요 내용 :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
 - 연고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설 보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우선 보호조치

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마 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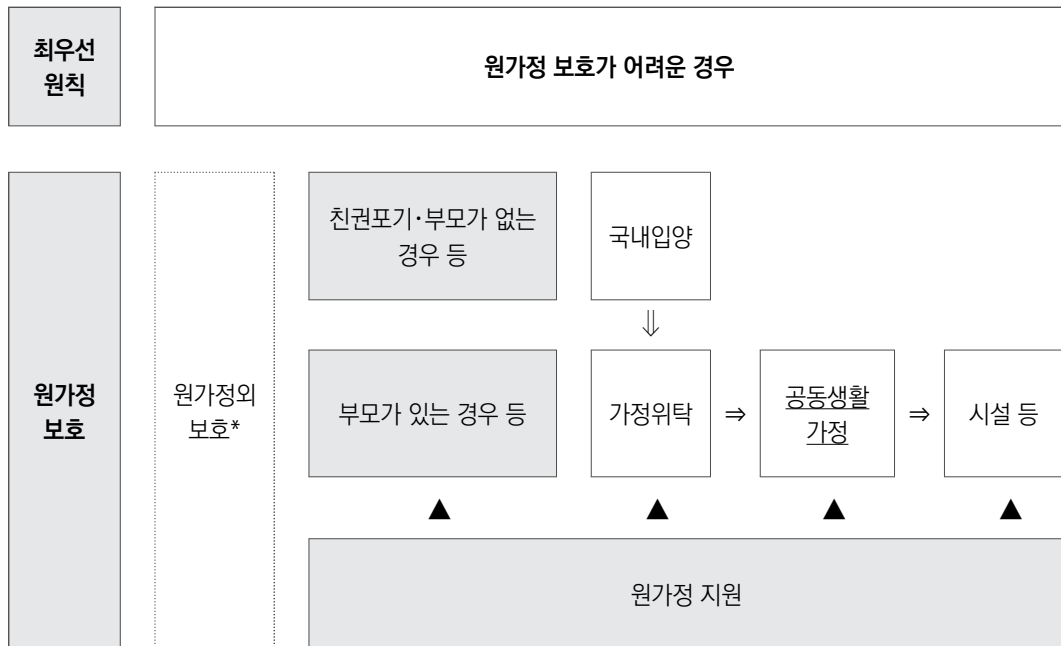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호자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도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 보호, 대안 양육 제도 등을 설명하여 보호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를 위해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판결로 입양 결정

바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등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제37조, 제38조
- 주요 내용 : 아동보호서비스는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을 포함하며, 아동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및 보호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으로 연계 가능
 - (가족기능 회복)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양육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 및 정서발달,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법 제37조)
 - (자립지원)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후관리 등(법 제38조)

참고 아동보호 조치의 기본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 국내 입양(친권 포기 시)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조치 실시



* '18.3월부터 원가정 분리 전 지자체(시·군·구)가 상담, 건강검진, 심리 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실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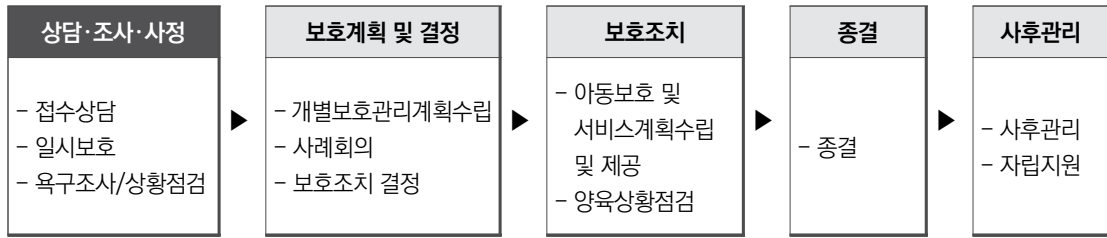
- (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사업대상) 0~만12세 이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등)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아동통합사례관리
 -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 (수행주체)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부서에 배치된 보건·복지·교육 분야별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사업수행
- (영역별 지원내용) 보건·복지·교육 등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영역	지원내용 예시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프로그램 등
부모/가족 통합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 1단계 : 상담, 조사, 사정

- (접수상담) 최초 방문자를 통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 2단계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여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조사·상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

●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이 분리보호 시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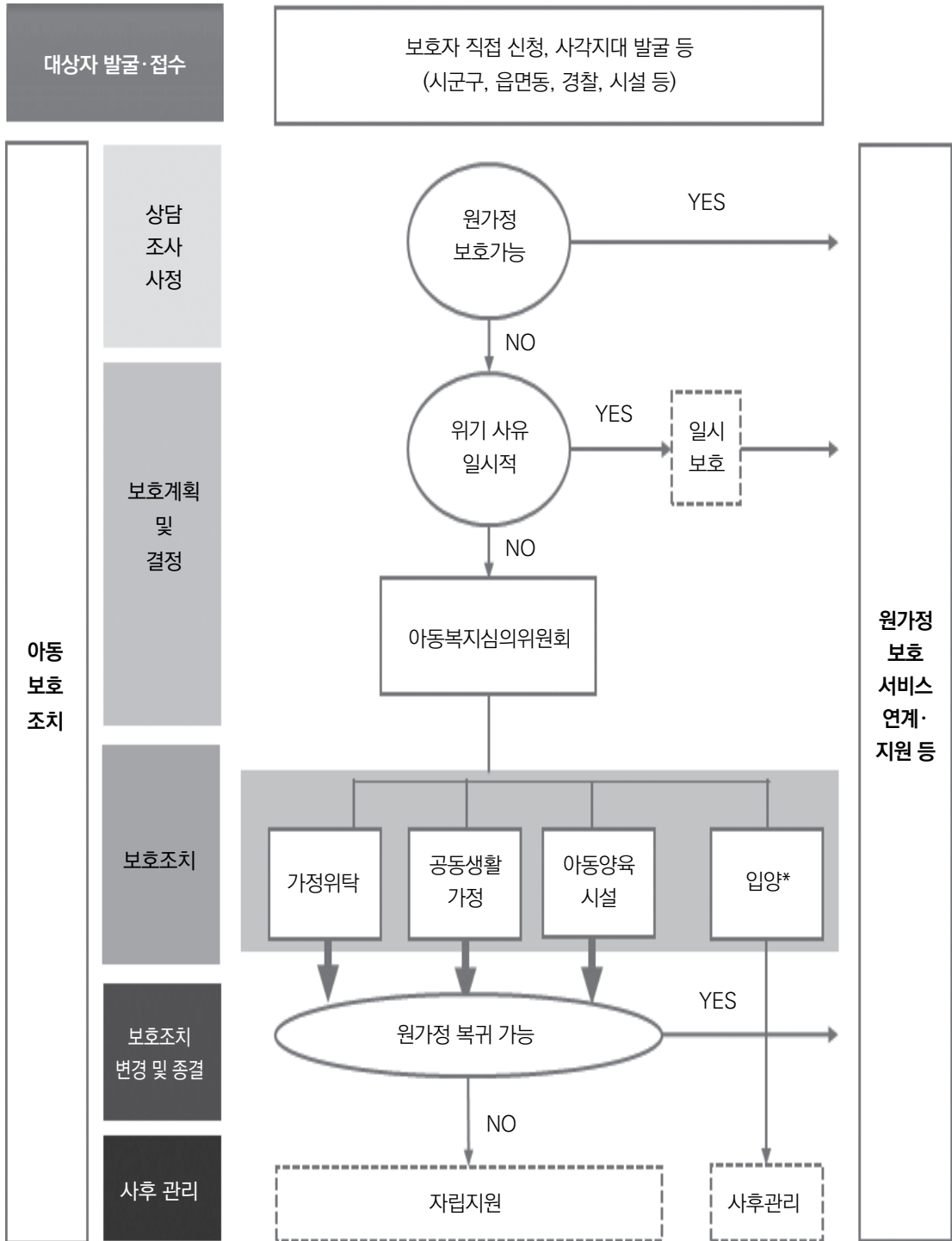
●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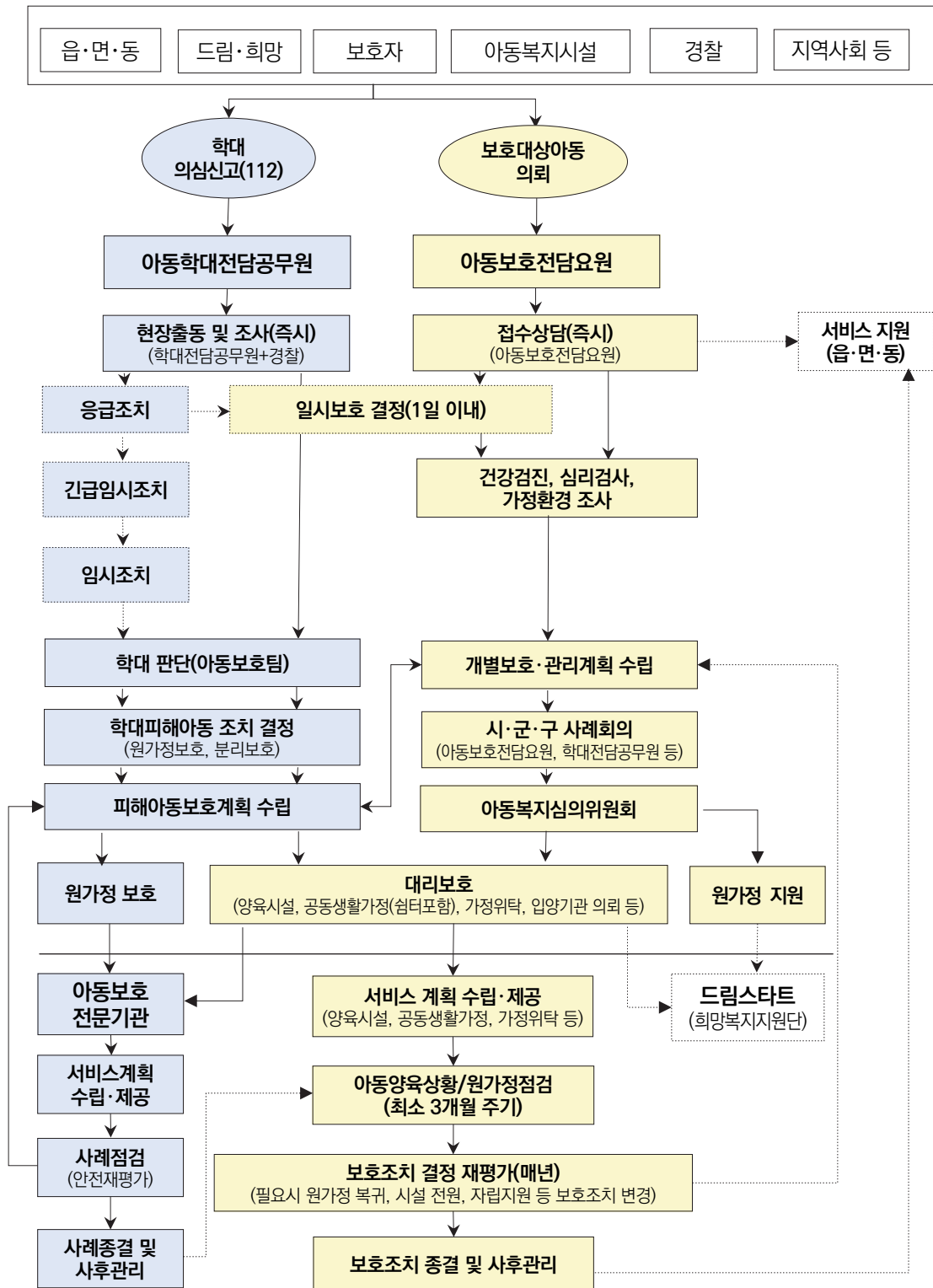
●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그림 2〉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4.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전후 조치 사항

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분리보호 필요한 아동

-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게 신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예시)

〈아동, 보호자, 가정 내 관찰〉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이 관찰되거나, 상흔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고함, 욕설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등)가 관찰되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태도 : 대화 과정 중에 보호자 눈치를 과도하게 보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직(긴장)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눈빛·표정·언어 등으로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청결상태 : 머릿니, 손·발톱 등에 묵은 때, 계절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쓰레기 등 방치
-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의 발육부진, 마른 체형 등이 관찰될 경우

〈주변인 보고〉

- 아동(초등 이하)이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집 밖에 오래 서 있는 등)
- 싸우는 소리(고함, 욕설, 폭력 등)나 아동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림
- 평소 아동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집 안팎에 위험한 물건 방치 또는 냄새(악취)가 나는 것 같음

- (현장출동 및 조사) 직접 신고접수 또는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조사를 실시
 - ※ 경찰에 동행요청 시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관련서식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요청서 활용
 - ※ 학대의심가정 방문 부재 시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관련서식 조사안내문 활용
- (응급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은 현장에서 학대피해로 인해 피해(의심)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인도)
 - 피해(의심)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일시보호하기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거나,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실시
 - ※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관련 서식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서, 응급조치결과보고,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동의서 활용

-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설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시 협의 통해 관할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시설을 파악해야함
- 응급조치 후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가 진행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카드(**서식7**), 일시보호의뢰서(**서식4**)를 작성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참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20.3.2 개정, 20.10.1 시행)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응급조치 3호(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실시 후 해당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에 따른 임시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72시간을 경과하여 아동의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일시보호의뢰

- (피해아동보호계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여부, 아동의 보호조치(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고소·고발 등)를 검토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서식43** 피해 아동보호 계획서) 수립 및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통합적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 ※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관련서식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동의서, 아동보호동의서, 피해아동보호 명령 청구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활용
 - 아동학대로 인해(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분리보호가 진행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분리보호 전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의하여 진행
 - ※ 아동학대 특성상 사전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조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보호조치 후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진행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 조사 및 상담결과,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보호·관리계획) 바탕으로 보호조치 전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점검표 작성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준비
 - ※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관련서식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동의서, 아동보호동의서, 피해아동보호 명령 청구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활용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등은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 (양육상황점검/원가정 점검) 학대피해아동을 가정 외 보호(대리양육)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하여 아동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 ※ 아동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에는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방문
- (보호 종결 또는 변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평가,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 진행 또는 사례 종결 여부를 검토 및 시군구에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진행 완료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종합 의견을 제출, 가정복귀가 가능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가정복귀결정
 - ※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관련 서식 양육계획서, 가정복귀계획서(아보전용), **서식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서식46** 가정환경조사서(아보전용) 활용
 -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종결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속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 상황 또는 보호조치 변경 상황을 모니터링
 - ※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의 원가정복귀가 가능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황 공유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원가정복귀 절차 진행

보호절차	사례예시
신고·접수	112접수 • 아동 부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 •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관할 전담공무원에게 학대신고를 통보하며 동행을 요청
아동학대 조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학대발생의심 장소(아동가정)로 출동 • 아동 가정은 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3인 가정이었음.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피해 아동(중2/여)과 학대행위의심자인 아동 부에 대한 분리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아동 모와의 조사도 실시 • 아동 부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알코올문제, 아동의 비행문제(술, 담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 내 존재하고 있었고, 신고 당일 아동 부가 아동의 비행문제에 대한 훈육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아동의 온몸을 폭행을 하게 되었음을 진술함. 평소에도 아동 부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손바닥을 이용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을 원가정보호 할 경우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과 합의하여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 부는 비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아동을 폭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고, 아동 또한 화내고 때리기만 하는 아동 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밝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을 원가정보호 할 경우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과 합의하여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도 • 경찰은 아동 부의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해 임시조치를 청구하였고, 더불어 입건하여 수사 개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 효력이 종료되는 시설입소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후의 추가 보호를 위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실시
	아동보호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학대조사 결과를 기초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여부 판정,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팀 내 사례회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를 통해 논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조사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

보호절차	사례예시										
학대 예방 및 가정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table><tr><th>아동보호전문기관</th></tr><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보호계획에 따른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함. 아동의 원활한 시설적응 및 아동 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아동 부의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모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부모교육을 전달 • 학대사건이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으로 아동 부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명령 100시간이 떨어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부에 대한 상담위탁 수행하였고 아동 부는 성실히 참여 • 10개월 후, 아동 부는 지자체에 가정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가정복귀를 거부하여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아동 부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 설득 </td></tr></table>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보호계획에 따른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함. 아동의 원활한 시설적응 및 아동 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아동 부의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모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부모교육을 전달 • 학대사건이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으로 아동 부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명령 100시간이 떨어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부에 대한 상담위탁 수행하였고 아동 부는 성실히 참여 • 10개월 후, 아동 부는 지자체에 가정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가정복귀를 거부하여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아동 부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 설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보호계획에 따른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함. 아동의 원활한 시설적응 및 아동 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아동 부의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모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부모교육을 전달 • 학대사건이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으로 아동 부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명령 100시간이 떨어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부에 대한 상담위탁 수행하였고 아동 부는 성실히 참여 • 10개월 후, 아동 부는 지자체에 가정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가정복귀를 거부하여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아동 부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 설득											
학대 예방 사례관리 종결	<table><tr><th>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th></tr><tr><td> • 15개월 후, 아동, 아동 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아동을 장기보호 하고 주기적인 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종결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계속 실시 </td></tr></table>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	• 15개월 후, 아동, 아동 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아동을 장기보호 하고 주기적인 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종결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계속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										
• 15개월 후, 아동, 아동 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아동을 장기보호 하고 주기적인 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종결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계속 실시											
양육상황 점검 및 원가정 복귀	<table><tr><th>아동보호전담요원</th></tr><tr><td>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 부의 주기적 면회 여부 및 관계개선,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36개월 후,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원만해져 가정복귀하기로 하였고 아동 부는 지자체를 통해 가정복귀를 신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신청내용을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정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및 결과 제공을 요청함. </td></tr><tr><th>아동복지심의위원회</th></tr><tr><td rowspan="2"></td><td><table><tr><td>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함. </td></tr><tr><th>아동보호전문기관</th></tr><tr><td></td><td><table><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td></tr></table></td></tr></table></td></tr></table>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 부의 주기적 면회 여부 및 관계개선,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36개월 후,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원만해져 가정복귀하기로 하였고 아동 부는 지자체를 통해 가정복귀를 신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신청내용을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정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및 결과 제공을 요청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table><tr><td>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함. </td></tr><tr><th>아동보호전문기관</th></tr><tr><td></td><td><table><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td></tr></table></td></tr></table>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함.	아동보호전문기관		<table><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td></tr></table>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 부의 주기적 면회 여부 및 관계개선,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36개월 후,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원만해져 가정복귀하기로 하였고 아동 부는 지자체를 통해 가정복귀를 신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신청내용을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정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및 결과 제공을 요청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table><tr><td>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함. </td></tr><tr><th>아동보호전문기관</th></tr><tr><td></td><td><table><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td></tr></table></td></tr></table>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함.	아동보호전문기관		<table><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td></tr></table>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함.										
아동보호전문기관											
	<table><tr><td>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td></tr></table>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나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호의뢰된 아동(비학대)

- (발굴·접수상담)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의뢰(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된 경우 최초 발견 담당자가 접수 상담 (**서식1**) 실시
 - ※ 보호자(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제 원인인지와 함께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도 동시에 면밀히 파악
 - ※ 접수상담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기상담지 등 사용 가능
- 접수상담 결과 아동의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하여 일시보호시설(일시위탁)입소(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후속조치 실시)
- 복합적 욕구·문제가 있거나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등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드림스타트로 의뢰
- 긴급지원 및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읍·면·동 등으로 의뢰
- (욕구 조사) 읍·면·동(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한 욕구조사(**서식3**)를 참고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층적 상담 및 조사
- (가정환경조사 및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사정결과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상황점검표(**서식6**) 및 친부모상황점검표(**서식5**) 작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 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유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담은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원가정의 보호기관은 서비스 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보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타 사례관리기관, 원가정의 보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방문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서식9**)을 실시(최소 3개월 주기)

보호절차	사례예시	
발굴·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방법①) • 모가 아동의 장애로 양육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요청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화문의(방법②) • 아동의 장애로 양육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청에 전화문의
접수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둘을 낳아 키우고 있던 중 첫째(7세)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니 둘째 (6세)는 발육 및 언어 등이 매우 늦어 일상생활 어려움 호소 • 보호자(모)는 사실혼으로 생활하던 중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집을 나가고 혼자 3년 동안 두 자녀를 양육 • 직장생활(계약직)과 양육을 병행하나 둘째 자녀의 발육부진 등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과 첫째가 둘째의 행동을 따라하는 등 심적 부담 존재 • 이에 보호자(모)는 동생을 시설에 맡기길 원함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사정 및 가정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은 접수상담 결과로 대상 가구의 사례관리 필요성 확인 • 아동의 분리보호 요청 관련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방문하여 아동 대상 욕구조사, 상황점검(친부모, 아동) • 조사·결과 둘째자녀에 대한 분리보호와 심리치료, 장애진단 여부 등 조치 ※ 방문일정조율로 방문 최소화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 / 드림스타트 • 모를 대상으로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월1회, 1년) • 첫째자녀 사례관리 의뢰(드림스타트) • 둘째 자녀 개별보호가 필요로 가정위탁보호(2년) 조치, 심리치료(1년) • 친부모와 정기적 만남 및 가족상담 진행으로 원가정복귀(2년)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읍·면·동 접수상담자, 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과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결과, 둘째는 가정위탁으로 의견도출	
보호조치결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사례회의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둘째 자녀 가정위탁보호 결정(아동의 장애여부 등을 고려, 전문 위탁부모교육수료한 위탁부모로 한정) 및 월 1회이상 가족 상담 실시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위탁부모와 친모와 첫째, 둘째 자녀 정기적 만남 지속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원가정외보호기관)에 통보	

보호절차	사례예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시·군·구 보고)하여 제공 - 장애아동 양육경험이 있는 위탁부모 연결 및 부모교육 실시 00시 초기정착지원금으로 아동 필요물품 구입(이불세트, 의류, 식기도구, 아동도서) -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위탁가정 인근에 00심리치료센터 주1회 인지치료 등(1년) - 장애여부 결과 경계성 지능장애로 지속적 관리 - 둘째 자녀 결연지원금 지원(아동 18세까지 지원) - 친부모대상 월 1회 전화상담 - 월 1회 가족만남 계획 및 진행(위탁부모, 상담원 동행) - 반기별 가족 나들이 진행(5월 가족소풍지원, 10월 가족캠프지원) - 월 1회 친부모 전화상담
양육상황점검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은 배치초기 1개월 이내 가정방문 실시 - 반기별 가정방문하여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 - 아동의 그림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리치료 시 인지치료에서 미술치료로 변경하여 실시함. 심리치료사가 월1회 아동의 변화정도 보고 아동보호전담요원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점검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 양육상황 점검 모니터링 -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와 협조하여 친부모와 첫째 자녀의 양육상황 점검(심리치료 현황 및 변화정도 포함) - 위탁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심리치료 결과 불안감 해소 확인
보호아동 재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둘째 자녀의 가정위탁보호 2년 완료(8세) - 친부모의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인 근무시간 확보 - 정기적 가족 만남으로 첫째, 둘째 자녀의 애착관계 유지 - 사례회의(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결과 원가정 복귀 의견 제시
종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보호 목적을 달성하여 원가정 복귀 의견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 및 복귀 결정
사후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월1회(3개월) 아동상황 확인(전화, 내방, 가정방문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후관리 후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 아동이 원가정 복귀는 하였으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아동의 욕구가 복잡적이고 관련 서비스 연계를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드림스타트로 이관)

다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경찰신고, 건강검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 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 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후 건강검진
 -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 지자체의 장(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서(서식37)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 및 신고 접수서를 5년간 보존
 -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 신고 접수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자체 이외의 자가 아동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호의뢰
- (일시보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건강검진 후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서식4 일시 보호 의뢰서) 등에 임시보호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상카드(서식38)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 각각 제출
 -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신상카드(서식39)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송부하며, 실종아동 등으로 확인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함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무연고 아동)은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경찰청장·지자체의 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 확인 시 신속히 실종아동의 가정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등 인수 확인(서식40)
 - ※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장과 협의하여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본창설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 해당 아동의 성본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성본 창설

- 유기아동 등을 발견한 사람 또는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연월일시, 성별, 출생추정 연월일, 아동 상태 및 보호자 관련 사항 등 그 밖의 상황을 조서(또는 신상카드)에 기록하여야 함(조서는 신고서에 같음)
- 시·읍·면의 장은 직접 또는 시(구)·군 아동복지 담당 등을 통해 유기아동 발견 즉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시(구)·군 의뢰 시 조서(신상카드)는 해당 시·구·군 및 보호조치한 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에 각각 송부)
- * 보호조치 내용 :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병원 입원(질병이 있는 경우), 아동 또는 장애인(장애가 있는 경우) 시설 입소 조치 등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담당자는 보호조치 후 즉시 성 및 본 창설을 위한 법원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원 허가에 따라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 아동의 성본 창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후견인 지정·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이전 또는 동 절차와 병행해 추진
- ※ 아동의 성본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찾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참고 성본창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민법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견인 지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성본 미창설 아동으로 부모 확인이 어려운 아동)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됨(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신청서(서식 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성년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함(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
- 보호시설의 장은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문 2부(서식 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함(타 시설에서 확인공고를 기 의뢰한 경우는 제외)
-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 공고하여야 함

참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 (후견개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불가능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및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
- (임시 후견인)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 발견
• 친권자 사망 또는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로 친권행사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 • 후견인 미지정 및 후견인 지정취소 등

발견 ↓

발견 ↓

• 자치단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검사 • 아동복지시설의 장 • 학교의 장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 ↓

법원 직권 ↓

법원
• 청구에 따른 후견인 선임 •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 선임

□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심판결정	후견인 직무 수행	후견인 직무종료
• 법원: 결정문 및 재판서 등본 송달 • 후견인: 미성년후견개시 지자체 신고, 아동의 재산목록 법원제출 • 시(구)읍·면사무소: 미성년 후견개시 신고서 접수,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 공시	• 후견인: 연1회 후견사무보고서 법원제출	• 후견인: 관리 계산, 긴급사무처리,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 • 시(구)읍·면사무소: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서 접수 및 종료 통지 ※ 아동이 성년도달로 인한 종료 신고 제외

- (보호자 확인) 유기 등 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유기아동의 부 또는 모 등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서식 40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한 경우,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아동보호전담요원)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 보고 또는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우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본 창설이나 미혼모(부) 지원, 아동 양육 교육 연계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 ※ 아동복지시설 보고 시 아동 소재지 시·군·구,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상담 실시함(서식 1 등 활용)
 - ※ 아동의 성본 창설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6.5.1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적극 설명

〈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6.5.19 개정〉

내용	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변경	「가족관계 등록법」 제14조, 제15조	기존 증명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모두 표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를 기본적 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등 조치(상담결과 등 송부)
- 의뢰받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조)의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이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함
 -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 의뢰 또는 협력하여 수행하되, '육구조사표(서식 3)' 등 활용



미아·유기 등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 조치사항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중 무연고자 점검 철저
 - ※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입소·전원·퇴소 신상카드 제출현황 파악 등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
- 공무원의 관계 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 등의 가족 등을 동반 가능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정책 수립 및 시행 •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 기타 필요 사항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실종신고 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여부 지도·감독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 제출
다중이용시설의 장	•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

보호절차	사례예시
발굴·접수	경찰 • 공원 공터에서 울고 있는 여자 영아 목소리를 듣고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 • 경찰은 즉시 출동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유기아동 발생정보 공유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계
접수상담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을 인계받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의뢰서 작성 및 일시보호시설장에게 아동 일시보호 요청
일시보호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아동을 7일간 보호 의뢰함. (위탁부모 배치 전까지 아동은 일시보호 상태 유지) 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을 일시 보호하며 아동 건강, 행동 등 체크함. •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필요시 유전자 검사 의뢰)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이 유기된 점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의 초안을 작성 •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전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 미달, 영양부족상태임을 확인함.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업무담당 팀장, 드림스타트, ○○가정위탁 지원센터, ○○양육시설 담당자, 중립적 전문가 참여하여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결과 아동이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의견도출
보호조치결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사례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가정위탁보호로 결정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에게 맞는 위탁부모 추천 요청(최근 6살 아동을 3년 정도 가정위탁한 뒤 원가정 복귀시킨 위탁부모에게 아동양육을 요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원가정외보호기관)에 통보

보호절차	사례예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시·군·구 보고)하여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에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00시 초기정착지원금, 결연지원금 및 영유아 관련 지원 서비스 연계
양육상황점검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을 가정위탁 배치 후 가정방문하여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3개월 단위로 양육상황 점검) - 위탁부모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 동행함.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상황 점검 관련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3개월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위탁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상황 점검함. (아동의 특이사항 발생 시 함께 가정방문하여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부적정 보호 시 보호조치 변경 검토)
보호아동 재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1년 단위 아동의 상황 등을 평가).
종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재학중 미용자격증 취득하여 졸업 후 집 근처 미용실에 취업함. - 아동의 연령도래(18세)로 인해 종결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하여 종결함(아동보호 조치의 종료신청).
사후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5년 동안 자립수준평가에 대해 안내(전화, 내방, 가정방문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사후관리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라 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 (원가정 보호 우선 접수상담)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신중한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임신 중 입양의뢰 및 출산 후 입양문의 시 우선 원가정 보호 우선 접수상담 실시
 - ※ 초기 상담 친생부모가 미혼모·부인 경우, 미혼모자 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등 미혼모, 부 지원정책 안내·연계
 - 친생부모가 접수상담을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입양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친생 부모에 대한 상담내용 등을 보고
 - 보고받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부모가 추가 상담에 동의한 경우 상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 거주지 시·군·구에 이관하여 원가정 지원 또는 보호조치 의뢰 실시
 - ※ 2020 입양실무매뉴얼 관련 서식 친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상담 기록지 활용
- (일시보호)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상담을 한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이전까지 우선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의뢰하고 서비스 제공
 -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접수상담을 실시하고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즉시 해당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입양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된 경우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아동을 입양기관으로 인도한 뒤 입양절차 진행 및 양육상황점검 실시
 - 입양기관은 시·군·구에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서식32) 발급 의뢰 → 시·군·구는 친생 부모에 대한 양육 상담 이행 여부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
 - ※ 2020 입양실무매뉴얼 관련서식 친생부모 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활용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절차 완료 전까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아동의 보호방법·장소 및 양육자(위탁부모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 예시) 입양기관의 일시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경우 서면 점검,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 직접 방문 등
 - 입양기관은 입양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호방법 및 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에 아동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서식34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하고 보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즉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입양 절차 진행 시 동의 필요사항

- 친생부(미혼부) 또는 친생모(미혼모)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입양동의를 받아야 함
 - 유기아동으로 친권자가 없어 입양동이가 어려운 경우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함
-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증명될 만한 서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민원처리법 시행령)

- (사후관리)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에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후관리 이루어진다는 것과 목적, 방법, 횟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는 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 36)를 수령해야 함
 - ※ 이사·연락처 변동 등 고지, 가족관계 변화 등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미리 안내
 - 입양기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입양을 의뢰한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해당 보호자 가구에 대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 의뢰

보호절차	사례예시
임신 중 입양문의	○○복지회(입양기관) • 임신 8개월 된 ○○(21세)(이하 친생모)은 ○○복지회(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에 아동을 키울 수 없다며 출산 후 입양을 의뢰할 수 있는지 전화 문의함. • 입양기관은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출산(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및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미혼모부 지원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입양의뢰는 아동 출생 후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친생모가 직접 양육 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함. • 친생모는 현재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으며,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직장 문제라고 둘러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함. 현재 직장은 퇴사한 상태로 수입은 없음. 친구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한 차례 받았지만, 정기진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접수상담 (출산 후 입양문의)	○○복지회(입양기관) • 친생모는 임신기간 40주, 3.4kg 여아를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시·군·구에 입양숙 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하여 산후조리원 7일간 있었음.

보호절차	사례예시
친생부모 상담	○○복지회(입양기관) - 출생 후 8일 시점에 입양기관은 친생모를 직접 만나 상담함. 숙려기간동안 많은 고민을 했으나 도저히 아동을 혼자서 책임질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며 아동을 입양보내기 원함. - 출생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입양기관은 친생모를 다시 만났으며, 입양신청을 원해 친생모의 인적사항, 성장배경과, 친생 부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된 계기 등 자세하게 상담함(친생 부모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친필로 작성).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 상담내용(친생부모 상담기록지)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했으며, 친생모에게 아동을 입양보내기 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한 바 취직준비로 어려울 것으로 함.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고사항 접수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모를 만나 추가상담(육구조사, 긴급복지지원 제도, 아동양육비 등)을 실시, 친생모가 입양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 준비
일시보호 및 입양동의	○○복지회(입양기관) - 친생모가 취직 준비로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여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까지 입양기관의 일시위탁가정에 보호 - 입양기관은 아동배경보고서(인적사항, 친생부모 배경, 아동발달, 진료상황 및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 - 친생모는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동의서를 작성(* 아동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 정보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포함) - 입양기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친생부의 동의를 받음(친생 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양기관은 아동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아동정보 등록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의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및 육구조사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입양) 초안을 작성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업무담당 팀장, 입양기관 담당자와 사례회의 실시 및 입양으로 의견도출, 아동이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의 일시위탁 가정에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회의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및 입양결정
보호조치결정	

보호절차	사례예시
양육상황점검	입양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상담내용 및 입양진행상황을 공유받고, 필요시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대리보호가정에 방문 및 양육상황 점검
양부모결연	○○복지회(입양기관)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함. 양부모의 서류 준비 및 가정방문, 양부의 회사로 불시 방문 등 실시 후 입양가정 승인 완료함.
입양허가 (가정법원)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에 예비양부모의 입양 서류를 접수 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짐. - 가사조사관은 예비 양부모가정 방문, 상담진행 후 재판부는 신문기일 지정 - 예비 양부모 가정법원 출석(아동과 예비양부모 적응 상황 모니터링) - 가정법원의 입양판결 확정
종결	○○복지회(입양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 인수 및 친생자 입양신고(아동 인수 시에 현재 아동의 적응상태, 수유, 수면실과, 배변 및 목욕상황과 발달상태 등 보고서 작성해서 전달.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과 정기적으로 체크한 신체 치수 기록 등 함께 전달)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양부모가 입양신고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로 안건 상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입양완료에 따라 종결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을 요청
사후관리	○○복지회(입양기관) - 사후 상담 및 가정 방문(1년 내에 총 4회의 사후보고서 작성. 2회는 가정방문 실시) -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황, 이름 변경 상황 등 확인 - 사후 관리 시마다 아동의 건강상태 파악, 예방접종 기록 확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지, 학대나 방임 정황 없는지 확인 - 양부모에 대한 대면교육(아동학대예방, 영유아 양육, 입양아동의 특성 등) 실시(사후서비스 제공확인서 발급) 아동보호전담요원 -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양부모 거주지 시·군·구에게 필요한 지원 의뢰 - 필요 시 양부모 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협조를 구하여 입양기관 가정방문 시 동행



V.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1.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보호조치 등은 시·군·구 아동보호팀 중심으로 업무 수행

〈표 3〉 아동보호수행 인력별 역할

업무단계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단계 (상담, 조사, 사정)	• 아동의 일시보호 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지원 • 친부모 및 아동상황점검	• 현장출동(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요청) • 응급조치(학대행위자 긴급입시조치 등)
2단계 (보호계획 및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전상정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3단계 (보호조치)	• 양육상황점검 • 원가정의 보호기관 모니터링 • 원가정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모니터링
4단계 (보호조치 종결)	• 보호조치 종결점검 및 종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전상정	• 사례관리 종결점검 및 종결
5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원가정의 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사례관리)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양육상황점검 협조 • 원가정 지원(부모교육, 지원 등) • 사후관리(가정방문) 협조	• 현장출동 동행요청 시 동행출동 및 조사지원 • 사례관리계획 계획 수립 및 제공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양육상황점검 공동업무 수행 • 사례관리 종결점검 및 종결 •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사후관리(가정방문) 공동수행

※ 이 외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사례관리 중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 요청 및 정보 공유 등 가능

2. 빈곤 등 위기가구 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 읍·면·동 아동복지(또는 사회복지) 담당

- 보호자 의뢰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보호대상아동 발굴 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또는 사회복지 담당(이하 “아동복지 담당 등”)이 초기 상담(**서식1** : 접수상담지)
 - 시·군·구에 보호자가 직접 보호의뢰 요청할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 초기상담 실시 후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및 지원반도록 안내
 - ※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보고
- 초기 상담 결과 해당 가구에 통합적 서비스 지원 필요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지자체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여 욕구조사 (**서식3** : 욕구 조사표)

나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등

- 가구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및 상담 실시
 - 상담 등을 실시하여 아동을 원가정과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실시
 -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하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로 연계

〈표 4〉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 기준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 원가정에서 보호되며, 대상가구의 주 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지원 서비스가 주된 욕구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부모의 양육태도·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초기 상담 또는 욕구조사/위기도 조사의 주요 문제에 아동학대·방임이 있어 학대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대정황은 없으나, 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가구단위 고난도 사례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하여 사례관리
※ 방문 필요 시 가급적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가정 방문 최소화

〈표 5〉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준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고용, 건강, 안전 등 두 가지 이상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소재와 이용 방법을 스스로 찾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고난도 사례 ※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상의 위기상황사례,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다 시·도 아동복지 담당

- 보호아동이 발생한 시·군·구와 보호 소재지 시·군·구가 상이하거나 아동의 보호장소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등 시·군·구 간 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등에서 수행

제 2 부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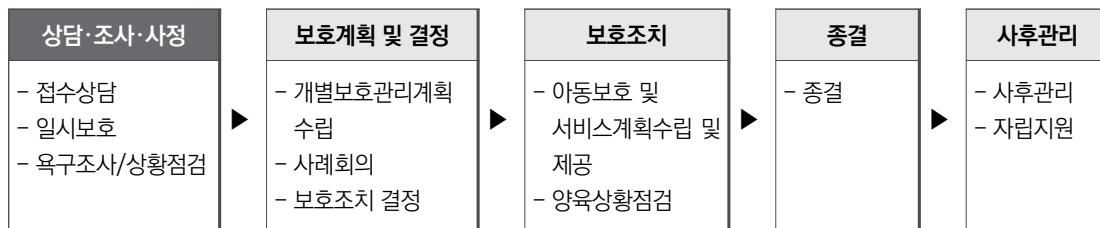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I. 상담·조사·사정

1. 개요



- (목적)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의뢰동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읍·면·동 및 타 사례관리의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의뢰
 -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추가조사 하되, 불필요한 방문을 가급적 최소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받아 보호조치를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상황 점검을 추가 실시

2.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소재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주로 실시
 - 그 외 보호자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대상아동을 발견한 담당자 또한 초기(접수)상담 및 욕구조사 가능
 - 타 사례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기존 접수상담 및 욕구조사로 같음 가능 하며, 친부모 상황 및 아동 상황 점검표 등 필요사항은 추가 조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하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상담 및 지원 받도록 안내
-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에 상담 의뢰
-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또는 시·도)에 보고

3. 수행시기

- 보호자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 보호신청 받은 경우 즉시 접수상담 실시하되, 조사·사정은 접수 상담 후 1주 이내 실시

4. 수행방법

가 접수상담(서식 1) 및 접수

- (보호자 직접 의뢰) 보호자가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보호의뢰 하는 경우 접수상담지를 바탕으로 보호의뢰 사유 및 가구 내 주요 문제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읍·면·동(또는 드림스타트)으로 의뢰
 - 아동에 대한 방임, 폭력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상담내용 전달 및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신고
 - 학대로 의심되지 않으나 양육의지가 결여되고 분리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상담 실시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타 사례관리의 조사 및 상담내역 또는 욕구조사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가정방문 또는 읍·면·동, 시·군·구 내방 최소화
 -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아동의 경우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의 접수상담 외에 추가상담 받기를 동의한 경우에 상담 실시

참고 입양의뢰한 친생부모 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필요 시 입양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실시)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답변을 강요하기 보다는 특이사항란에 '확인 불가' 등으로 기재하고 넘어가도록 함

나 아동의 일시보호

- 학대·유기 등으로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위탁 또는 일시보호시설 등에 일시 보호의뢰(**서식 4**)
- 일시보호 중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다 가정 방문 방법 및 사전 준비사항

- 보호자에게 우선으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및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표 작성 등을 위한 일정 협의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 ※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시·군·구 공무원 등 동행 협조
 - ※ 분리보호대상 아동 이외 가구원에 대해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일정을 같이 협의하여 동행 방문
- 접수상담 및 기존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

라 욕구조사표 활용(**서식 3**)

- (목적) 총 10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조사
- (욕구파악) 대상아동 및 필요시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주요 원인,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파악
- (주변 환경 파악) 가족의 경제 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 관계망에 대한 파악
- (잠재적 자원) 욕구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 ※ [서식3]에 붙임 설명 참조

마 아동상황점검표(서식 6)

- (목적)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아동의 장애 및 질병 유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
- (사회적 욕구)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성인과의 관계가 연령 및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에 맞게 적절한지를 확인
- (교육적 욕구)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보호조치로 인한 전학 가능성 확인



- ❖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특수교육배치 여부 파악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파악
- ❖ 관할 구역 내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가능성 파악
-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

- (취약점) 아동의 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달장애, 학습의욕 등을 파악
- (분리보호 관련)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호조치 될 가능성 여부 및 아동의 보호 희망형태를 파악하고 보호조치 필요성 여부 평가

바 친부모상황점검표(서식 5)

- (목적)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부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부채여부, 자립가능성, 알코올 등 약물문제
 - 부모의 현재 및 과거의 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파악



부모역량 사정 시 부모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함.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예시 :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특히 부모의 자립이 지체되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장기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음

- (가정환경 등) 가정의 경제 상황, 결혼 상태, 등을 파악

※ 일부 사례에서는 재혼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부부 및 새 가족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보호자(부모)는 주로 다른 사유로 아동을 보호해주길 요청하기 때문에 최근의 가족관계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정할 필요가 있음

- 주변 환경

- 연고자에 의한 보호 또는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아동 및 보호자의 현재 및 과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함

- (아동학대 여부)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며, 학대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 (양육태도·의지) 양육태도, 아동과의 관계, 자녀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함

참고 양육태도 점검시 참고사항

- 아동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가?
- 아이에게 잘못을 꾸중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가?
- 아동이 실수할 경우 엄하게 훈육하는가?
-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는가?
- 체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예시 : 아동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 아동이 행동에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혼자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가?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을 파악함

※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의서(예: 가정위탁보호동의서)를 작성하게 함. 이때 구상권 청구(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함

- (지속적 연락 여부)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함을 안내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추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표 6〉 사정 시 고려사항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1) 우선적 고려사항	• 아동안전 • 장애여부 • 특수육구 • 가정보호우선조치 대상자 (2세 미만) • 한국 국적 취득여부	• 아동학대 여부 • 양육의지 • 보호역량 • 가정환경(경제상황, 주거환경 포함)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여부	• 대리양육·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자원
2) 기타 고려사항	• 보호배치에 대한 인지 및 참여 • 교육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문화적 욕구 • 강점 및 취약점	• 부모의 성장배경 • 지속적인 연락여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 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참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방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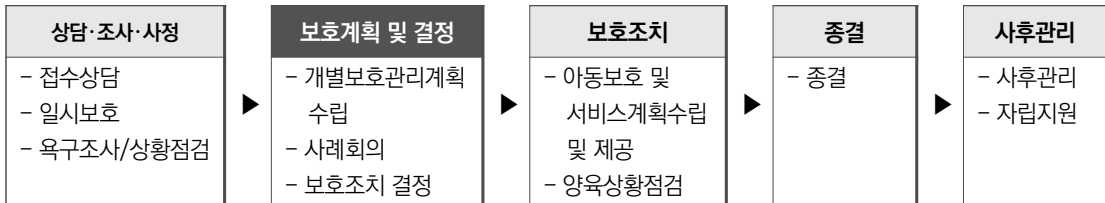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Ⅱ. 보호계획 및 결정

1. 개요



- (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보호계획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 결정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가 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소재지 기준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
 - 보호대상아동의 소재지에 적절한 보호 장소가 부재할 경우 우선 보호대상아동 소재지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타 시·군·구에 의뢰
-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를 의뢰할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등과 협업하여 작성

나 수행시기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수행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준비사항

- 지자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및 민간기관 자원을 파악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친부모)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확인
- 입양의 경우, 관할 구역에 입양기관 소재 여부, 미소재 시 협조 가능 입양기관 사전 파악

● 목표 설정

- 단기(1개월)와 장기(1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 다만, 입양대기아동에 대한 단기목표는 입양아동의 보호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장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년 이내의 개입을 통해 아동의 상황 변경 또는 아동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표 수립
 -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단기·장기 목표 달성 시기 결정

✎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접수상담,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점검 등을 종합하여 욕구 영역별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 보호조치의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 목표, 제공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기
-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하기

욕구영역	우선순위	단기목표	장기목표
안전	1	원가정 분리조치	대리양육으로 아동안전확보
건강	8	건강검진 실시	해당 나이 신체 평균 도달
일상생활유지	-	-	-
가족관계	6	주1회 가족상담 실시	정기적 가정상담으로 가족 간의 관계개선
사회적 관계	5	학교 집단따돌림교육 실시	또래관계향상프로그램 참여로 교우관계 개선
경제	4	디딤씨앗통장 가입	매월 4만원 입금 연 96만원
교육	2	학습지 신청	매월 학습지 지원 및 점검
고용	7	부의 일자리 자원 연계	부의 직업교육 참여 지원
생활환경	3	난방기구 설치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책상, 책상 지원으로 아동의 공부방 확보
법률 및 권익보장	-	-	-

●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서식8)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 상황점검의 종합평가를 기록
- 보호조치 유형, 적정보호 기간을 결정하고 보호조치로 인해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 아동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
 -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계획서(서식43) 작성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 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받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같음
-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단기, 장기)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욕구 영역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주기 등을 명시
- 원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또는 보호조치 변경을 위한 재평가) 주기를 설정 하고,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 아동을 원가정 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 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 만2세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 ※ 연고자가 대리양육에 동의하고, 위탁부모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리·친인척가정위탁 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동의

- (친부모 등 보호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 변경 등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구두로 이용 동의를 구함
 - ※ 유선(구두)으로 동의 시 계획서에 유선(구두) 동의 일시 등 기재하고, 계획 변동 시에도 동의절차 이행
- (아동)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 ※ 설명내용 및 일시 등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기재

3. 사례회의 운영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소재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이 참석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과 팀원(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원 참석 원칙
 -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보호가 가능하거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더라도 가구 내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참석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분리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호조치 관련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계자) 참석 협조
 - 그 외 사례를 의뢰한 읍·면·동 담당자 또는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 의뢰할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 참석 요청 가능

다 수행시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종결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실시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 관련 논의 등 필요시 수시 개최

라 수행방법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 사정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하고 협의
 - ※ 자료 공유 시 보호대상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사례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참석자에게 제공한 회의자료 수거하여 파기
-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 실무자들과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유형과 보호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8**)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특히, 원가정의 보호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제공 수 및 시간) 등을 확인 및 협의
-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내에서 보호하되 조사·사정과정에서 나타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 보호조치 후에도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및 진행상황 점검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시 서비스 개입 여부,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의 변화, 장·단기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내용 포함

〈표 7〉 사례회의 종류

보호조치 결정 사례회의	모니터링(사례점검) 사례회의	보호 변경/종결 사례회의
•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정 결과 공유 및 분석 • 보호조치 필요 여부 판단 • (보호결정 시) 보호유형 및 보호기관 등 논의 • (가정내 보호 결정 시) 서비스·자원 연계, 사례관리 이관 여부 논의 등 • 장·단기 목표 등 보호계획 논의	•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주기, 적절성 등 논의 • 아동의 욕구 및 태도 변화 등 점검 • 원가정 양육환경 변화 점검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 장·단기 목표 점검 및 신규목표 수립	• 재평가 결과 분석 및 보호조치 변경/종결 여부 판단 • 사례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 및 가족의 변화 논의 • 사후관리 계획 논의

4. 보호조치 결정(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수행주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 업무 수행
 -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하되, 아동 수가 적거나 필요한 경우 시·도 단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가능

나 수행시기

- 시·군·구에서 아동 보호조치 심의를 의뢰한 후 1주 이내에 개최하여 보호조치 결정 완료
 - 다만, 학대피해 또는 긴급하게 보호해야할 사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우선 일시보호 및 필요한 조치 후 심의 가능
-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안전으로

상정하여 진행

참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

-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따른 현장판단(판단척도 사용)과 자체 사례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판단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
- 판단결과를 변경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법기관의 결정, 추가 증거 확보 등)

다 심의 내용 및 방법

- (심의 내용)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립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결정
 -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기간 등 적합성 논의 및 결정
 - 보호대상아동 및 해당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논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 사용 가능한 자원 확인 및 조정 등
- (심의 방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호조치 결정
 - 가급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적시에 아동의 보호 조치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
 -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 요원, 그 외 아동보호를 의뢰받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 세부 운영 방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참조
- (결정 통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15) 송부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결정통지대상(보호자)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아동 보호전문기관, 검사, 변호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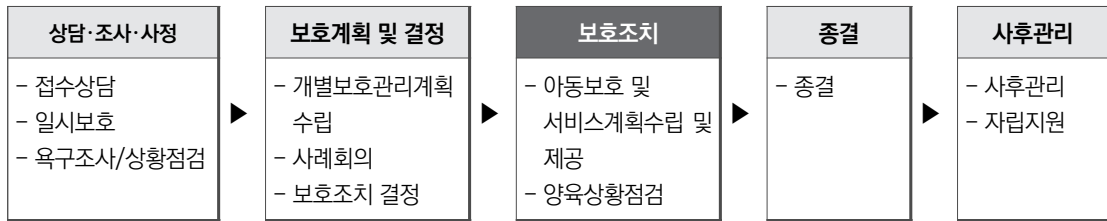
〈표 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주요 항목	실행 여부		비고
	예	아니오	
1.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만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친부모상황점검표에 따라 보호자의 상황이나 욕구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예	아니오	
5. 친부모상황점검표 이외에 보호자 상황, 가구 여건 등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보호조치 기간 수립 시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졌는가? 아닌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	예	아니오	
8. 아동이 질병, 장애, 학대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 내용이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9.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후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0.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예	아니오	



Ⅲ. 보호조치

1. 개요



-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서비스 이행상황, 양육상황 및 아동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제공

가 수행주체

-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사례관리
- 아동 보호 소재지의 아동보호전담요원
 - 필요시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지원

나 수행시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후
 - 다만,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보호하는 경우나 가정위탁(조부모, 친인척)의 경우 필요시 우선 보호 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가능

다 수행방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가정의 보호기관에 아동보호 요청
 - (입양 신청) 입양기관에 아동에 대한 입양의뢰 및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서식32) 송부
 - ※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이 필요한 경우 성본창설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입양대상아동확인서는 사회복지전산 관리 번호로 우선 발급 후 성본창설 완료 시 주민번호로 변경
 - (가정위탁 신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에 따라 <표9>에 따른 신청서 작성
 - ※ 읍·면·동 및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조치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서식27) 발급 요청 시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내역을 기록·관리

〈표 9〉 가정위탁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위탁부모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서식 18)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최근 3년)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서식 18)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최근 3년)
읍·면·동 및 시·군·구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서식 19) • 아동카드(서식 7) • 가정위탁보호동의서(서식 24) • 가정위탁 가족동의서(서식 25)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21)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서식 26) 시·군·구 제출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서식 20)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서식 22)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아동카드(서식 7) • 가정위탁보호동의서(서식 24)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21)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서식 20)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서식 22)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가정위탁 지원센터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서식 19) • 일반위탁부모 추천서(서식 23) • 가정위탁 가족동의서(서식 25)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

※ 아동보호전담요원 미배치 지역은 2020 아동분야사업안내 참고

- (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입소) 시설입소(이용)신청서(서식30), 아동입원 의뢰서(서식31), 아동카드(서식7: 시행규칙 별지 4호)신청서 제출

※ 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등 상세 절차는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참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전 보호를 실시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시 아동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있음을 알리고, 보호자의 희망과 달리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급여 등)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아동수당, 기초생활급여) 수급 변동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원가정의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등 상세히 작성
 - 원가정보호를 위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친부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포함

〈표 10〉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 아동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 양육상황 점검(계획에 부합하는지 점검) • 사례회의 개최(주관) • 주기적인 사례점검 및 아동보호기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원가정 지원(상담, 지원 등)	• 아동의 보호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사례관리 • 사례회의 참여 • 원가정 지원(상담, 관계개선, 부모교육 등)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가 수행주체

- 아동의 보호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양육상황 점검
 -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입양기관의 관리내용을 활용하여 양육상황 점검
 - 보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다만,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소재지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협조요청 가능)

- 읍면동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 아동담당자(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 위탁가정 및 입양 전 위탁가정,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협조

나 수행시기(점검시기)

- (단기)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점검 및 3개월 이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여부 등 추가 점검
- (장기·상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분기별 점검 실시
 -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은 자주 실시 가능

다 주요 점검 사항

- 서비스 계획의 달성수준 파악(양육상황점검 **서식 9**)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수립된 목표 일치성)
 - ※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아동 의견 반영
 - 보호대상아동에게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양의 충분성,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
 -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참고 아동 양육상황 점검사항

- 아동이 수립된 목표에 맞게 보호되고 있나?
-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 아동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 아동의 변화에 따라서 보호조치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이 필요한가?
-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는 없나?
- 아동의 원가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 기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라 수행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욕구 및 상황의 변화를 파악

- 양육상황점검은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그 외 필요시 유선 상담 등을 통해 대상아동 및 보호자의 생활실태 등 파악
 - (아동)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입양,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 등 저위험사례는 전화 또는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
 - (친부모 등 보호자) 유선 상담 또는 사례관리 연계 시 연계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 및 보호조치 변경 또는 보호 종결을 실시
 - 점검결과 서비스의 종류, 횟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서비스계획을 재수립함

〈표 11〉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점검결과	조치방안
•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 발생 • 현행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없거나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할 경우	욕구 재조사 보호조치 변경 아동학대신고 등
• 서비스의 종류, 양 및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계획 재수립
•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문제와 완화된 경우, 아동과 결함할 희망하는 경우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	종결을 위한 평가

〈표 12〉 아동 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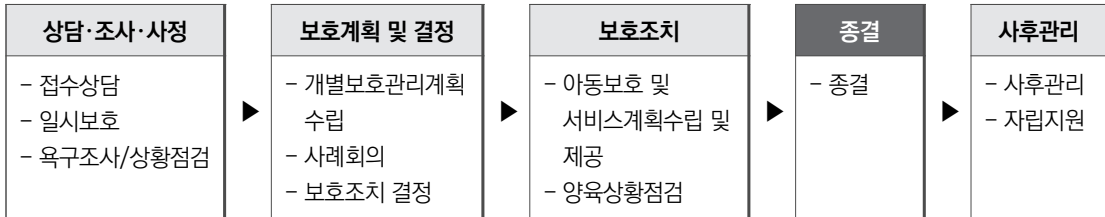
재평가시 평가항목	점검내용
원가정복귀 검토 (서식10 가정복귀 점검표)	• 친부모의 양육 희망정도 • 아동의 가정복귀 희망정도 • 원가정의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안정화정도 • 친부모의 양육준비태도 • 주변의 평가정도
다른 양육시설 혹은 가정위탁으로 변경을 검토	•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 • 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정도 •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와 관계정도 • 원가정의 보호기관(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또래관계정도

- 점검 및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그 결과에 대한 보호결정(변경)통지서 서식15를 보호자에게 송부



IV. 종결

1. 개요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예시 :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이(만 18세)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해당 시설 퇴소) 여부 결정

참고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법 제16조)

-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18.3.23 시행)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가 수행주체

- 아동의 보호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에 대한 심의

나 수행시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가정 복귀 신청을 받거나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된 경우
- 입양은 법원의 입양허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종결

다 종결 유형

●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의견 청취 후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서식10)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 해결여부 확인
 -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 확보하고,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귀가 적합성 파악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호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아동소재지 시·군·구에 아동의 보호자 소재지 시·군·구에 가정복귀 점검을 의뢰
 - 가정 복귀 점검표(서식10) 결과를 아동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문서로 통보
- 아동 소재지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 부모와 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아동 원가정복귀 의견서(서식11)'를 요청
- 원가정의 보호기관은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할 의사를 밝힐 경우 '양육 계획서(서식13)'를 작성하여 제출
 - ※ 부모의 성품·행실 불량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호 필요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는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환경조사서(서식46)'를 제출받아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 판단
 - ※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귀 여부 등 결정

●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를 종료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 보호조치 종료(퇴소)신청서(서식16: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를 제출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서식29) 확보
-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모가 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받아 아동 자립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전 요건 부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보호 연령 초과로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 장학금,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안내

● 타 시·군·구로의 전출에 의한 종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 해당 시·군·구로 이관 및 필요 보호조치 확인

● 보호기간 연장

- (사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가능
- (절차) 보호기간 연장신청,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 해야함을 안내

※ 아래의 사유에 한해 교차적용 가능

-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의해 연장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의해 연장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각 연장사유에 의해 연장보호 중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제4항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군 입대(입대 전·제대 후 대기기간 보호 연장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 단순 휴학은 중지사유 - 단순휴학은 1회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제1호】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제2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제3호】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제4호】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라 수행절차

- 가정복귀 점검 및 아동, 보호자, 아동의 보호기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 사례회의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점검표(서식 10)’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환경 점검함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서비스 제공과정, 가정복귀 점검을 통한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정도, 사후관리 계획을 정리한 종합심사서(서식 12) 작성

참고 종결 시 고려 사항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부모의 양육 환경 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양육환경 등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종결심사서, 가정복귀점검표,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학대피해아동의 경우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종결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학대피해아동이 아닌 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종결의 경우 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다만,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가정 복귀 요건 충족 여부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 여부 결정
- ※ 다만,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신청서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증 등 필요 서류 제출 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

- ☺ - 학대 등의 문제로 보호조치 되었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해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가정 복귀가 안전한 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아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
- 아동이 성장하면서 장애소견이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위탁부모가 아동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할 경우 다른 위탁부모에게 재배치 전까지 보호요청함

-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면,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 가정복귀 신청서(서식17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2일 이내 처리

※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가정위탁 서식) 기록을 확인하여 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혜택의 부정수혜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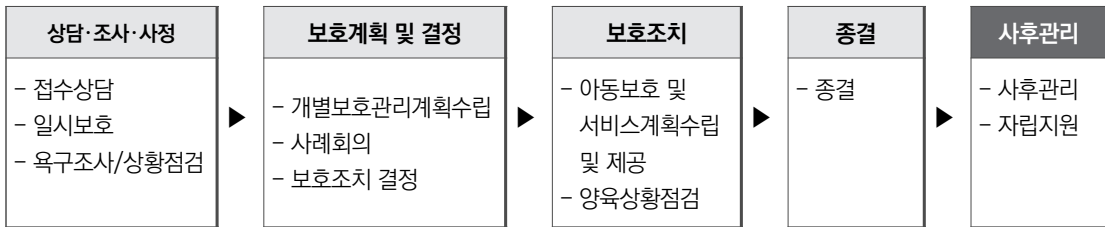
- 보호종료 후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 시행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할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는 종료 후 거주할 시·군·구를 경유하여 종결심사서 이관



V. 사후관리

1. 개요



-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참고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진행

참고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특례법 제25조)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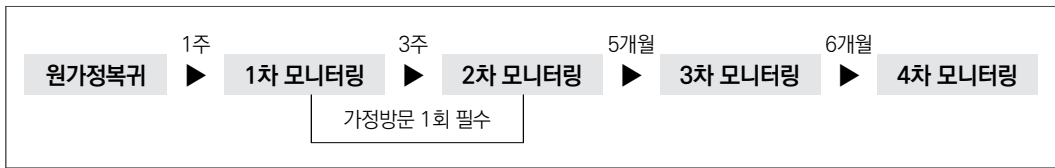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행주체

-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 외 보호기관의 사후관리 협력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또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례관리 실시기관에서 사후관리
 -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보호아동의 사후관리 담당 기관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 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등)
 - 사례관리 담당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나 수행시기

- 보호 연령 초과로 종료된 경우
 - (원가정보호기관) 18세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연1회 자립수준 평가)
 - ※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
 - ※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계획 변경(자립수준평가) 및 필요 서비스 연계
 - (아동보호전담요원) 연 1회 이상 원가정보호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행점검
-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
 - 총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 원가정복귀 후 일주일 이내 유선 및 가정방문 실시, 1개월 이내 2회이상 모니터링(1회 가정방문 필수),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 입양된 아동의 경우
 - (입양기관)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 의무이행
 -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이 성립된 후 1년동안 양친과 양자의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 (아동보호전담요원)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행점검

다 수행방안

-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원가정의 보호기관)으로 하여금 귀가한 아동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가정별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상담 시행) 이행 및 점검
 - 아동을 원가정 복귀 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서식 13) 및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5·6)를 활용하여 재점검하며,
 - 아동의 분리보호 전과 비교하여 부정적 항목이 증가하였을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의 보호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

2. 자립지원

가 수행주체

-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원가정의 보호기관
 -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
 - 자립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나 주요내용

- 자립지원(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38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 자립지원계획 수립 :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 1회 자립수준평가를 추진하도록 인력지원 등 적극 협조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최대 5년)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표 13〉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제공주체
소득지원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 디딤씨앗통장(CDA, 아동발달지원계좌)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긴급지원(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중앙정부
주거지원	• 청년 전세·매입 임대주택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임대료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 • 보호종료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취업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취업관련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 청년취업성공패키지(청년 특성파악에 따른 단계별 종합취업지원) • 창업성공패키지(전국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지원) • 내일배움카드 • 대학재학생 직무체험, 대학일자리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학업지원	•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 국가근로장학금(교내, 현장) • 학자금 대출 •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 폴리텍대학(우수 기능인력 양성)	
자립지원금	• 자립정착금(보호종료 당해 연도 지급, 500만원 이상) • 대학입학금 등 지원(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각 지자체
심리정서지원	• 보호종료아동 심리상담 서비스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기타지원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북	

제 3부

부 록

I.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II. 아동위원

II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I.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포함)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공통	서식1	접수상담지	
	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육구조사표	
	서식4	일시보호 의뢰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5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6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7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
	서식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서식9	양육 상황 점검	
	서식10	가정복귀 점검표	
	서식11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서식12	종결심사서	
	서식13	양육계획서(보호자용)	
	서식1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서식15	보호조치 결정(변경)통지서	
	서식1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3
	서식17	아동 가정복귀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4
가정 위탁	서식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19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20	범죄경력조회요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21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22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23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서식24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서식25	가정위탁가족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호
	서식2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의1호
	서식27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2
	서식28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4호
	서식29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5의1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양육 시설	서식30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서식31	아동입원(입소) 의뢰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입양 아동	서식32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5호
	서식33	입양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8호
	서식34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0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13호
	서식35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9호
	서식3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2020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20호
유기 실종 아동	서식37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38	신상카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39	신상카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서식40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3호
학대 피해 아동	서식43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1호
	서식44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동의서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5호
	서식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8호
	서식46	가정환경조사서(아보전용)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9호
	서식4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 리스트	아동분야사업안내2 서식23호

2. 보호대상아동 관련 상세 참고 자료

- 1)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1,2
- 2)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1,2
- 3)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 매뉴얼
- 4) 2020 입양실무매뉴얼
- 5) 2020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 대상아동 정보									
대상자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아동) (보호자)		
실거주지									
□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번호		
주소									
□ 접수 정보									
접수구분	미단순안내	미요청접수	접수일자		접수유형				
신원	미신원확인	미신원불명	182신고	미유	미무	발생일자	발생장소		
가구유형	미부부중심가구		미미혼모부가구		미조손가구	미한부모가구	미소년신식가구	미장애인가구 미다문화가구 미북한이탈주민가구	
주거구분	미자가		미전세	미월세	미임대주택	미무상임대	미기타		
보호의뢰 사유	미유기		미미혼부모·혼외자	미미아	미기출	미비행·부랑	미이동학대	미보호자 빈곤·실직	미보호자 사망 미보호자 질병
주요문제	미보호자 수감 미부모 이혼 등 미기타								
	미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 미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미일상생활유지 문제 미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질병 등) 미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미경제적 문제 미교육 및 학습의 문제 미취(창)업 및 직무수행 미생활환경 문제 미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미기타								
접수내용									
접수결과	미아동보호서비스 접수 (미일시보호필요) 미타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 (미음·면·동 서비스 미통합사례관리(희망) 미아동통합사례관리(드림) 미아동학대(의심)								
접수자 의견									
개인정보활용동의	미동의 (미동의서 첨부 미유선/구두) 미미동의								
접수상담번호				소		속			
연		락		처		접수 담당자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작성시기	보호자 의뢰 등 보호대상아동 발굴 시(1일 이내)
작성목적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파악하여 보호 필요 여부 및 서비스 파악
작성방법	전화상담, 내방,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상담 작성(복귀 후 시스템 입력)
활용방법	아동과 가정의 기초정보 확보하여 보호조치 요청된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항 목		작성방법
대상 아동 정보	대상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아동, 보호자), 전화번호, 주소	○ 대상아동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기록 *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기록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보호자가 의뢰가 아닌 경우 기록(사례이관 전 상담자의 정보)
접수 정보	접수구분, 접수일자, 접수 유형	○ (단순안내) 단순서비스, 음면동으로 이관 ○ (요청접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서비스 접수결과와 연관 ○ 지역사회기관 방문, 가정방문, 내방, 전화 선택
	신원, 182신고, 발생일자, 발생장소	○ 유기아동일 경우 해당 정보 기록(아동카드 정보)
	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항 목	작성방법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
주거구분	○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무상임대, 기타 선택
보호의뢰 사유	○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선택
주요문제	○ 주요문제에서 아동의 보호자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 ○ 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상의 문제) -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족 내 폭력 및 학대, 방임이 있는 경우 -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 ○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 자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술 혹은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인터넷·게임 중독,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유지 문제(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문제) - 일상(식사, 용변처리, 옷 입기, 세탁, 몸 씻기, 시장보기 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변관리나 일상생활유지 기능(전화걸기, 교통수단이용, 복약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도보 등 외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취미 및 여가 활동의 부족 및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 - 부부·부모-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자녀양육 및 보육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문제(친지, 이웃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문제) -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문제(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 - 기초적 욕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자원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항 목		작성방법
		○ 교육 및 학습의 문제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문제 ○ 취(창)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취업·창업상의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문제) - 기술, 경력, 능력부족 등으로 취(창)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 자녀양육, 돌봄, 건강문제 등으로 취(창)업이 어려운 경우 - 구직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 비정규성 등의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생활환경 문제(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문제) - 주거 및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누수, 가스누출 등 거주지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문제) -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접수내용	○ 의뢰자 및 대상아동이 요청하는 주요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기록 * 피면담자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
	접수결과	○ 아동보호 서비스(분리보호필요아동),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음면동 서비스,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아동통합사례관리대상(드림스타트), 학대피해아동) 표기 ○ 타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연계일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례이관 ○ 단순 정보제공으로 문제 및 욕구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서비스 거절, 상담 거부 등으로 초기 상담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외 대상으로 기록
	접수자의견	○ 일차적으로 대상자 유형 분류의 사유를 기술하고, 향후 사례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상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개인정보활용동의	○ 서식2에 대한 여부 기록(접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여부 체크)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동 서식은 동의서 샘플양식으로 각 시·군·구에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u>개인이력</u> , <u>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상황내용</u> (건강상태, 주거사항, 경제상황), <u>가족구성</u> , <u>가족관계</u> 등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시 점부터 보호 종결된 시점 5년까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복지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 등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에 의거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사례관리 담당자 - 사례회의 참석자(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시설 -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시설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서비스 종결 후 5년

본 조사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선별과정 및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보관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본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 시·군·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3 육구 조사표

육구조사표										□아동 □보호자	
대상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차수()차						
				휴대전화							
주거사항	주거 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연립 ☐ 아파트 ☐ 무허가, 옹막, 비닐하우스 ☐ 여관, 고시원, 쪽방 ☐ 기타()	주거 구분	☐ 자가(소유주:)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임대주택(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무상임대 ☐ 기타()	기숙 구조	☐ 방 ()개 ☐ 거실 ()개 ☐ 주방 ()개 ☐ 화장실 ()개 ☐ 욕실 ()개 ☐ 화장실·욕실 겸용	난방 방법	☐ 가스·기름 보일러 ☐ 연탄·화목보일러 ☐ 전기매트·전기온돌 ☐ 없음 ☐ 기타()	☐ 공용 ☐ 단독 ☐ 수세식 ☐ 재래식 ☐ 분채 ☐ 별채		
	주거상태	☐ 양호 ☐ 노후 ☐ 긴급보수필요 ☐ 폭염취약 ☐ 한파취약 ☐ 환기부적절 ☐ 채광부족 ☐ 협소한공간 ☐ 악취/불결									
가구유형	주거환경	☐ 소음 ☐ 유출가 ☐ 대로변 ☐ 기타()	이사계획	☐ 유 ☐ 무	거주기간	☐ 장래인거주 ☐ 북한이탈주민거주 ☐ 다문화거주	년	개월			
	관계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부부중심가정 ☐ 조손가정 ☐ 미혼모부가정 ☐ 공동체가정 ☐ 기타()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부부중심가정 ☐ 조손가정 ☐ 미혼모부가정 ☐ 공동체가정 ☐ 기타()	☐ 동거여부 ☐ 성별 ☐ 연령 ☐ 주민번호	☐ 성별 ☐ 연령 ☐ 주민번호	☐ 동거여부 ☐ 성별 ☐ 연령 ☐ 주민번호	☐ 결혼상태 ☐ 학력 ☐ 직업 ☐ 장애 ☐ 질병 ☐ 대성자가 생각하는 가구원 문제	연락처			
가족사항	▶ 구성원 세부정보										
	성명	전화번호		후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이동과의 관계		가구구성사유							
	주소	실거주주소		학교명/학년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생활수준				
결혼여부	기혼/미혼 사유	근로능력유무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유형	질병종류					
비고						
▶ 상세정보						
생애주기	가구원 특성					
가구원 문제		문제열인				
우선순위	원하는 지원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성장과정)						
신체 및 외적사항	키	몸무게	혈액형			
	얼굴형	☐ 동그한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야윈 ☐ 보통 ☐ 비대		
	머리모양	☐ 장발 ☐ 단발 ☐ 식발 ☐ 곱슬 ☐ 파마 ☐ 커트				
	착의사항	☐ 상의 [] ☐ 하의 [] ☐ 신발 []	그밖의 특징			
수혜자	개시일~종료일	급여·서비스명	서비스유형	제공주기	제공기관	서비스상태
서비스이력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0 안전	①가족내 안전유지	폭력 성추행/성폭력 유기 방임 학대 실증					1. 정신질환 2. 음주문제 3. 약물 오남용 4. 폭력적 성향 5. 왜곡된 성의식 6. 치매 7. 무기력감 8. 성격차이	9. 무관심/의지없음 10.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11. 가족내차별 12. 가족구성원 간 갈등 13. 가정해체 14. 경제적 빈곤 15. 종교문제 16. 이유 없음
	②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폭력 성폭력 협박·위협 학대 착취					1. 자기보호능력미약(정신지체 등) 2. 폐임/악용 3. 친인척 간 불화 4. 타인과 불화 5. 원한관계 6. 부채/금전거래	
1 건강	①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일시적 질병 및 상해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비만 영양결핍					1. 유전적(선천적)원인 2. 사고 3. 자해 4. 방임 5. 학대 6. 신체 질병 및 질환 7. 스트레스 8. 잘못된 식습관	9. 운동 부족 10. 질병에 노출된 환경 11. 경제적 빈곤 12. 적절한 치료 부재 13. 정보 부족 14. 치료 기피 15. 원인 미상
	②정신적 건강유지	환청/환각/망상 자해(자살)행위 약물오남용·중독 식사거부 수면문제 음주문제 (주정·과도한 음주·알콜중독)					1. 음주문제(주정, 알콜중독 등) 2. 약물 오남용·중독 3. 스트레스 4. 정신분열증 5. 우울증 6. 신경증(공황장애·PTSD) 7. 기타 정신질환 의심 8. 치매 9. 성격장애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2 일상 생활 유지	①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공격적 행동 (싸움질기·반복적 민원제기·폭력행동)						
		대인기피						10. ADHD
		은둔/침거						11. 불안감
		의사소통장애						12. 이성문제
		위생관리문제						13.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 및 중독
		이상한 행동						
		불안감						
	②여가생활 활용	식사 및 준비 곤란						1. 신체질병/장애
		의복착용 곤란						2. 정신질환
		외출 곤란						3. 지적장애
		약물복용 곤란						4. 신체허약/노환
		위생관리 곤란 (용변처리 등)						5. 무기력감/의지없음
3 가족 관계	①관계형성	긴급상황 대처 곤란						6. 교육·학습 부족
		여가활동 부족						7. 상해
		부작질한 여가활동 (게임 도박 등)						8. 보호자의 부재(가출 및 사망 등)
		부부갈등						1. 시간 부족
		부모자녀 갈등						5. 적절한 치료 부재
	②관계형성	고부갈등						6. 가족의 무관심
		형제(자매)갈등						3. 경제적 빈곤
		가족간 관계소원						7. 주변의 괴임
								8. 가족의 통제 및 교육 미흡
								9. 여가시설 부족
3 가족 관계	①관계형성	부부갈등						1. 실업
		부모자녀 갈등						12. 가족 내 차별
		고부갈등						13. 학업성적 부진
		형제(자매)갈등						14. 자녀 이성문제
		가족간 관계소원						15. 교우관계
	②관계형성	부부갈등						16. 재산상속 갈등
		부모자녀 갈등						17. 금전거래
		고부갈등						18. 경제적 빈곤
		형제(자매)갈등						19. 정보부족
		가족간 관계소원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4 사회적 관계	가족간 관계단절							
	가족간 갈등							
	장애인돌봄 곤란							
	노인돌봄 곤란							
5 경제	②가족돌봄							
	아동돌봄 곤란							
	환자돌봄 곤란							
	친인척과 갈등							
5 경제	①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친인척 관계소원							
	친인척 관계단절							
	이웃간 갈등							
5 경제	이웃간 관계소원							
	이웃간 관계단절							
	직장생활 어려움							
	학교생활 어려움							
5 경제	종교생활 어려움							
	기타 사회생활의 어려움							
	식비 부족							
	주거비 부족							
5 경제	의복비 부족							
	난방비 부족							
	공과금 체납							
	통신비 부족							
5 경제	의료비 부족							
	①기초생활 혜택							
	1. 실직/휴폐업							
	2. 파산							
5 경제	3. 신용불량							
	4. 사고 및 화재							
	5. 일시적 질병 및 상해							
	6. 중한 질병							
5 경제	7. 건강보험 미가입							
	8. 정보 부족							
	9. 저임금/수입							
	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5 경제	11. 근로능력자 부재(사망/기출/실종)							
	1. 정신질환							
	2. 지적장애							
	3. 대인기피							
5 경제	4. 적응력 부족							
	5. 지원 거부							
	6. 따돌림							
	7. 폭력							
5 경제	8. 성폭력							
	9. 상습범죄							
	10. 학업수행 부진							
	11. 탈선 및 가출							
5 경제	12. 경제적 빈곤							
	13.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14. 시간 없음							
5 경제	1. 친인척 부양부담							
	2. 대인기피							
	3. 소란·위협							
	4. 금전거래							
5 경제	5. 위험물 방치							
	6. 쓰레기 방치							
	7. 정신질환							
	8. 음주문제							
5 경제	9. 지역개발							
	10. 종교갈등							
	1. 다문화가구							
	20. 무관심							
5 경제	21. 장애							
	22. 질병							
	10. 시간부족							
	11.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②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1. 지적장애 2. 치매 3. 정신질환 4. 음주문제 5. 습관성 도박 6. 보호자 부재 (소년소녀가정) 7. 근로능력자 부재	8. 실직/휴폐업 9. 파산 10. 신용불량 11. 사고 12. 의료비과다 13. 교육·학습 부족 14. 타인에 의한 세금 체납(명의도용 등)
	부채							
	과태료·벌금							
	과소비·낭비							
①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쓰기·말하기 문제						1. 언어능력 부족 2. 신체적·정신적 장애 3. 학습능력 부족	4. 학습의지 부족 5. 학습지도자의 부재 6. 보호자의 무관심/인지부족
	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특수교육 문제						1. 경제적 빈곤 2. 교육환경 지원자의 부재 3. 가족부양부담 4. 보호자의 인식/무관심/의지부족	5. 이성문제 및 교우관계 6. 탈선 및 가출 7. 본인의 무관심/의지부족 8. 정보부족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②교육환경 개선	무단결석							
	학업성적 부진							
	실업·실직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2. 부채 3. 가족 간병부담 4. 자녀 양육부담 5. 조직생활 부적응 6. 따돌림 7. 경험 및 경력 부족 8. 직업기술/훈련 부족	9. 저학력 10. 교통문제 11. 자금부족 12. 정보부족 13. 복지서비스 의존 14. 잦은 실패경험 15. 낮은 자존감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열악한 근로환경							
①취(창)업	저임금							
	비정규직							
	구직의 어려움							
	창업의 어려움							
7 고용	기술교육의 필요							
	취업동기 부족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8 생활 환경	② 고용유지	젓은 직장 이동						
		반복적인 재취업/창업 실패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9. 저학력 2. 부채 10. 교통문제 3. 가족 간병부담 11. 자금부족 4. 자녀 양육부담 12. 정보부족 5. 조작생활 부적응 13. 복지서비스 의존 6. 따돌림 14. 잦은 실패경험 7. 경험 및 경력 부족 15. 낮은 자존감 8. 직업기술/훈련 부족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실업상태에 익숙해짐						
		취업동기 부족						
		사업체 유지의 어려움						
	① 주거 내 부 환경개선	화장실 열악						
		주방시설 열악						
		위생환경 열악						
		도배·장판 열악						
		냉난방 열악						1. 시설부족 2. 시설낙후 3. 시설위험 4.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등) 5. 쓰레기 방지
		전기/가스 시설 열악						
		상하수도 시설 열악						
		지붕노후(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이동 곤란						
		사생활 공간 부족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② 주 거 외 부 환경개선	학습환경 열악							1. 도서산간지역 2. 유흥업소 밀집지역 3. 공장 밀집지역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5. 우범지역 6. 편의/기반시설 낙후·부재 7. 위험물 방치 8. 쓰레기 방치 9. 정보 부족 10. 도시계획 (강제철거·퇴거)	
	교통접근성 열악								
	상습침수								
	철거 등 공공수용 거주지 이전								
	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생활환경 열악								
9 법률 및 권익 보장	법률처리(재산/위자료 등) 문제							1.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 2. 법적후견인 부재(장애인·미성년 등) 3. 폭력/범죄 4. 이혼 5. 사고 (의료·산재·교통사고 등) 6. 결혼이민/이주/난민/탈북 7. 주민등록 말소 8. 경제적 능력 부족	
	신분상실								
	사고보상 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적문제								
②권익보장	차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2. 관련 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권리침해								
10 기타									
	기타								

주요요구	우선순위	요구범	요구내용	
종합의견			요청 서비스 내역	
사회적 지지지원			첨부파일	
관리번호			소 속	
연 락 처			담당자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아동보호전담요원(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시기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욕구(아동과 보호자)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작성방법	접수상담 바탕으로 작성(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 아동상황점검 중 반드시 1회는 가정방문하여 실시)
활용방법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등

항 목	작성방법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욕구조사대상자의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차수를 기재
주거사항	○ 대상자의 주거 형태, 가옥구조, 주거구분, 난방방법, 화장실, 주거상태, 주거환경, 이사계획, 거주기간 등을 기록함
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 및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가족사항	○ 욕구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보(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 등)를 기록함 ※ 독거여부에서 함께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주소 기록함
대상아동 세부 정보	○ 아동카드 연동(유기아동, 가출, 실종되어 발견된 아동)
서비스 이력	○ 대상가구가 조사시점 현재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조회, 참조하여 세부적인 욕구 조사를 실시함(※ 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 자동 연계 출력 가능) ※ 가능하면 서비스 내역을 상세히 기록함(예, ‘자녀교육 관련 정보 알려주기 3회’, ‘정서적지지 상담 2회’, ‘담임선생님과 면담 2회’, ‘집 근처 태권도장과 연결’ 등)

항 목	작성방법			
육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 사례관리 후보자에게 10대 육구영역 세부 20개 육구 항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사례관리 후보자 및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문제영역이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여 기입함 - 세부육구 영역별의 각 주요현상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원을 파악하여 육구조사표의 ‘대상자 칸’에 기입(※ 시스템에서는 기 입력한 가구구성원이 대상자 리스트로 조회) - 대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각 주요현상별 원인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주요 원인’의 해당항목 번호를 ‘원인 1, 원인 2, 원인 3’에 기입함 - 각각의 원인을 야기 시키는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최대 3개까지 ‘원인제공자1 000/원인 제공자2 000/원인제공자3 000’를 기입함(※ 시스템 입력 시에는 원인제공자 리스트 중에서 해당항목을 체크) ※ 현상에 따라 원인제공자 및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 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 육구조사 후, 육구 별 우선순위를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으로 1부터 5까지 파악하여 기입함			
	○ 육구 영역(10대 육구영역) - (안전 육구)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의 육구 - (건강 육구)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 - (일상생활유지 육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동 및 개선육구 - (가족관계 육구)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육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육구 - (사회적관계 육구)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주변인물 및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육구 - (경제 육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육구 - (교육 육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 - (고용 육구)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기능수행상의 문제 - (생활환경 육구)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 - (법률 및 권익보장 육구)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육구			
	○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각 육구영역별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입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table><tr><td>대상자</td><td>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사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td></tr><tr><td>원인 제공자</td><td>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없음(기타)</td></tr></table>	대상자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사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원인 제공자
대상자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사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원인 제공자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없음(기타)			
	○ (강점) 문제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예, 취업의지 강함, 신체건강 등) ○ (장애물) 문제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예, 무기력, 신체건강 불량, 자녀와의 갈등 등)			

항 목	작성방법
종합의견	○ ‘주요욕구’는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10개의 욕구 항목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6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 종합의견은 대상자가 진술한 표현된 욕구를 기반하되,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작성함
사회적 지지자원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 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함
요청 서비스 내역	○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4 일시 보호 의뢰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보호 의뢰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그 밖의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탁보호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 자	아동보호전담요원(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 기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아동의 안전문제로 보호자로부터 긴급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 보호자 부재 등)
작성방법	접수상담 바탕으로 작성(대면 상담 후)
활용방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일시 보호 의뢰서

대상 아동	○ 아동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아동의 주소(일시보호시설 입소 전 주소) 기재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확인 가능한 경우 작성]
보호자	○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기재 예) 친부, 친모, 외조모, 이모, 삼촌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과 현재 직업 기재 예) 홍길동, 74년 3월9일, 고졸,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 보호자(부, 모 모두 기재)의 주소(실거주지) 기재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
그 밖의 사항	○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설(또는 위탁부모) 기재 ○ 일시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작성 예) 학대피해아동으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보호(학대피해아동으로 현장에서 긴급분리 판단)
	○ 아동의 특이사항(질환, 복용해야할 약, 장애 등)이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예) 아동이 00질환으로 취침 전 00약 복용

친부모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활용**

*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가정 환경	1 부모는 동거중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직업: 근로시간: (모) 직업: 근로시간: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소득: 평균 만원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채: 만원
	6 부모의 주가가 자기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질병 또는 장애유형: (모) 질병 또는 장애유형: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종류: 치료여부: (모) 종류: 치료여부:
	9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종류: 이용기간: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1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번호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대 등 내용: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불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양육 태도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신호나 비언어적·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예	아니오	불분명함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친한친구: 좋아하는 음식: 반 / 번호: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희망자: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희망보호형태: (예)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가 보호),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시설보호(그룹홈, 양 육시설), 입양 등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기간 : , 보호형태: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만남 주기: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가 부모 본인이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양육자: 사유: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_____개월 이다.			개월	
소견					

- ◆ 부모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경우, 원가정 유지를 위하여 음·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하도록 조치
- ◆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약할 경우,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고, 부모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아동보호전문요원
시기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작성목적	아동을 보호자(친부모)로 부터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과정 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객관적 자료,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점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우선 체크되어야 하며,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필요 - 평가항목에서 [아니오]가 대다수인 경우, 8번 & 12번 & 13번 & 17번을 체크한 경우 분리보호 적극 검토 - 친부모상황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의심 상황 발견(관찰, 보고)시 즉시 신고

친부모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활용

*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가정 환경	1			예	아니오	
		부모는 동거중이다.				예) 3년전 이혼가정, 2년째 별거중,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
		☞ 이혼, 별거, 사별,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경우 '아니오' 체크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 잦은 싸움, 가정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혼, 별거, 미혼부모, 한부모 가정 등 '아니오' 체크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이혼, 별거, 미혼부모, 한부모가정 등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모 중 해당되는 되는 경우 모두 기재, 무직일 경우 특이사항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6개월전 부터 실업상태(무직) (부) 직업: 근로시간: (모) 직업: 근로시간: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아니오' 체크 및 사유 기재 ※ '소득이 안정적'이라 함은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소득: 평균 만원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 부채가 없거나 소득에서 일정부분 탕감이 될 경우 '예', 부채가 많거나 소득으로 해결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부채가 있으나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부채: 만원
6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 자가,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지불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용(월세) 비율 검토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자가주택,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 명확하게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꺼려할 경우 집안환경 체크(예: 약봉지, 병원 관련 영수증 등) ※ 부모의 질병 또는 장애유형 강도에 따라 주변지지 자원 수준 반드시 파악, 필요시 분리보호 적극 검토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부) 질병 또는 장애유형: (모) 질병 또는 장애유형: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부) 종류: 치료여부: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주변 환경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소지하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호 능력, 의지 등을 고려 분리보호 필요성 검토 본 항목 답변을 꺼려할 경우 추가조사 필요하며, 가정방문 시 환경 체크(예: 술 병, 안주류 종류의 봉지, 술 냄새, 본드 등) ※ 알코올이나 약물문제를 현재 상태 중심으로 기재, 문제가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할 경우 면밀히 검토 필요. 다만 과거시점 문제일 경우 특이사항에 기재 (예)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아 완치됨.			(모) 종류: 치료여부:
	9	예	아니오	예) 종류: 이용기간:
	10	예	아니오	예) 명절, 가족행사 있을 때 자주 왕래함 예) 미혼모가 된 뒤 외조부모와 연락 두절
양육 태도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조부모, 친인척과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계 유지할 경우 '예', 조부모·친척 계시더라도 관계가 안 좋은 경우, 조부모·친척 안 계실 경우 '아니오' ※ 되도록 조부모·친척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가능성 확인을 위함)			예) 양육시설에서 함께 성장한 00 있음. 집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아이를 돌봐줌, 명절 때마다 찾아와주고 도움을 줌(생필품 지원, 생활비 지원 등) 예) 지방에서 서울온 뒤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고 있음.
	11	예	아니오	예)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양육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과거의 경험확인 학대 내용, 횟수, 기간 등 기재 예) 6개월 이내 신체학대 판단되었음
	12	예	아니오	불분명함
	13	예	아니오	불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기재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4	음식제공 및 돌봄 돌 중 하나라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아니오', 둘 다 충분히 제공할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			예)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심, 아동의 반응에 호응함, 아동양육에 관심이 높고 쉬는 날 아동과 놀아주려고 노력함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보호자는 아동에게 절대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동이 잘못할 경우 생각할 시간을 주며, 아동양육 등을 위해 일정시간 경제 활동할 것임을 표명함.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보호자가 체벌,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하거나 주장할 경우 '아니오' 아동상황 점검 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교차 확인 필요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다			예)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심리교육 2회 참석(20.3월)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예	아니오	불분명함
16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내용, 횟수 등 기재			예) 보호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했으며, 아동의 학교행사 및 담임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함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관련 질문 외 항목을 아는 경우 기재 ※ 아동상황점검 시 교차 확인 필요	예	아니오	예) (+) 친한 친구: 000, 좋아하는 가수: ◇◇ ◇, 좋아하는 음식: 000, 반/번호 등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희망자: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아동을 위해 안전한 선택한 경우인지, 부모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경우인지를 기재. 특히 부모가 학대경험, 질병, 근로수입 등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키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특이사항에 기재	예	아니오	희망보호형태: (예)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 모가 보호),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시설보호(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등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에 있다.			기간: , 보호형태:
	원가정의 보호 경험이 있을 경우 기간 및 보호형태, 사유 등 기재 ※ 원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을 경우 추후 장기보호에 대해 가능성 고려	예	아니오	예) 00양육시설에서 2년(년 월~ 년 월) 보호됨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예) 정기적 만남 희망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 아동과 만남을 희망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장기보호 가능성 고려)하며, 정기적 만남을 희망하더라도 만남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사유, 상황 등 기재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는 부모 본인이었다.				만남주기: 6개월 단위 (원양어선을 타야해서 6개월 후에 가능함)
20	☞ 부모가 주양육자 아닌 경우 사유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양육자: 사유: 예) 외조모/근무지가 타 지역이라서 아동양육을 외조모에 부탁함. 특이사항에 본인이 아닌 경우 기간, 횟수 등 확인 예)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조치 된 경우(1년) 예) 부모 이혼하여 친조모가 6개월, 외조모가 1년 양육함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 보호자의 아동학대 경험, 체벌방식의 훈육,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부하여 경우 사유 기재 ※ 보호자의 현재 상황(예: 직업특성상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감) 확인 ※ 분리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확인(추후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지, 방향 등)	예	아니오	불분명함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본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보호자가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해결의지(경제활동 재개, 부모교육 참여 의지, 아동에 대한 애정도 등) 고려하며, 보호자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거바탕으로 이야기 할 경우 '예', 분리보호 이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리보호에 대한 불만 또는 인지부족, 아동 양육 의지가 부족할 경우 '아니오' 체크 ※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사유 확인하여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____개월 이다. ☞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분리보호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개월	예) 5년,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5년 정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아동과 함께 생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번호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 보호기간이 짧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분리보호 조치 해결기간 등을 고려		
소견	○ 친가정 상황 점검표는 평가항목에서 '아니오'(8, 9, 12, 17, 18번 '예'의 개수) 체크가 많을수록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검토 필요 예) 친가정 상황 점검한 결과 23항목중 18개가 '아니오'로 평가항목에 체크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경험의 수시로 발생, 부의 수입 불안정과 알코올 중독, 모의 정신적문제 등 고려하여 분리보호조치를 고려		

아동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기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정신 건강 · 의료적 요구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예	아니오	장애 유형: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2	만성 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	예	아니오	질병명: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	예	아니오	
	4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사회적· 교육적 요구	5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예	아니오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예	아니오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8	자아존중감이 높다.	예	아니오	
	9	정학·유급·퇴학 경험에 있다.	예	아니오	
	10	학업성취도가 높다.	예	아니오	학업 외 기타 교육적 요구: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문제 행동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떼운다.	예	불분명함	
	13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솔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걸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인터넷 등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예	불분명함	
	14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예	불분명함	
	15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밥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예	불분명함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 (학습 장애 포함)	예	불분명함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	예	불분명함	
	18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불분명함	희망보호유형: (예) 조부모, 친인척 등,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19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불분명함	만남 주기:
	소견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작성목적	아동을 보호자(친부모)로 부터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보호자(시설관계자, 위탁부모 등)가 알아야 할 아동의 상황, 치료해야할 부분 등을 알기 위한 점검표로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과정 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해당 아동(취학아동) 또는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호자(친부모)를 대상으로 본 상황 점검 실시 - 객관적 자료,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기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필요

아동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 원가정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 등을 파악하여 가정 적절한 배치 형태 등을 결정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정신 건강 · 의료적 욕구	1	아동에게 증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예) 이외 다른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경우 기재	예	예)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 예) 질병명에 따른 치료 주기 기재	예	질병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사회적·교육적 욕구	3	주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 ※ 관련 행동, 주기 등 기재 ※ 아동 면담 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심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도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아동의 비언어적 행동 관찰함.	예	아니오	불분명함
	4	항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 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 흡연량 정도 기재 ※ 본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환경 관찰(제털이, 담배 냄새, 술병 등)	예	아니오	불분명함
	5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특징 기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예	아니오	불분명함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기재(집단따돌림의 피해자, 피해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예	아니오	불분명함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자기통제력이 안되는 경우(상황)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8	자아존중감이 높다. ※ 자아존중감이 낮다(낮다)고 평가하는 이유 또는 자아존중감 검사한 경우 해당 결과 주요 특징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9	정확·유급·퇴학 경험이 있다. ※ 경험이 있는 경우 횟수, 기간 등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문제 행동	10 학업성취도가 높다. ☞ 높다(낮다)의 학업성취도의 근거, 학업점수, 등수 등 기재, 별도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 해당 내용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업 외 기타 교육적 욕구 :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 필요한 특수교육 및 사유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 해당항목 체크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13 총동조력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걸들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인터넷 등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 해당 항목 1개 이상 있을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14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 해당 항목 1개 이상 있을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15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벗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 해당 항목 있을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 학습의욕이 저조하다는 사유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 ☞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유 기재	예	아니오	불분명함
18	아동은 원가정의 보호를 희망한다.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 이유 등 기재(부모와의 애착정도) ※ 아동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시 반영	예	아니오	희망보호유형: (예)조부모, 친인척,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아동은 원가정의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만남 주기: ☞ 아동과 부모의 애착정도에 따라 희망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사유 기재필요 정기적 만남 희망과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이유, 상항파악 기재	예	아니오	만남주기:
소견		○ 아동상황점검표는 평가항목에서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예) 아동상황 점검한 결과 정신건강·의료적 욕구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교육적 욕구에서 자기통제력이 기지고 있지 않으며, 문제행동으로 충돌조절에 어려움, 학습의욕의 문제가 체크 되었음. 이에 분리보호가 결정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분리보호가 안될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구분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발생 당시 사진
	182신고 [] 유 [] 무	
	[] 미아 [] 기아 [] 가출아 [] 기타()	
	[] 남 [] 여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나이 세 ([]추정 []확실)	
	주소			
	학교명 학교 학년		기타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월수입 원	생활 수준 []상 []중 []하 []수급자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신체 및 외적 사항	키		몸무게		혈액형
	cm		kg		형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야윘 [] 보통 [] 비대			
	머리 모양	[] 장발 [] 단발 [] 삭발 / [] 곱슬 [] 파마 [] 커트			
	착의사항	상의	하의	신발	
그 밖의 특징					
보호조치 사항	날짜		조치 내용		
	보호시설명 (가정위탁지원센터명)		주소		

가정환경(성장 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 판정	
금품지급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상담소명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1) 작성방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아 동 카 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구분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발생 당시 사진	
	182신고 [] 유 [√] 무			
	[] 미아 [] 기아 [√] 가출아 [] 기타()			
	[√] 남 [] 여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충북 청주시 ○○구 00로 00-0		나이 11 세 ([] 추정 [√] 확실)	
	주소 충북 청주시 ○○구 ◇◇길 000			
	학교명 ◇◇초등학교 4 학년	기타		
	발생 일시 2020. 9.21	발생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00동 유흥가 근처		
보호자	관계 모	성명 정승정	생년월일 88.7.25	학력 및 직업 고졸 간호조무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00길 00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10-xxxxx-xxxxx
	월수입 220만원	생활 수준 [] 상 [] 중 [√] 하 [] 수급자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외조모	성명 최선미	생년월일 1966년 9 월 2 일 (55 세)	직업 청소노동자
	관계 동생	성명 김경민	생년월일 2015년 8 월 16 일 (5 세)	직업 ◇◇어린이집
	관계	성명 김경은	생년월일 2015년 8 월 16 일 (5 세)	직업 ◇◇어린이집
신체 및 외적 사항	키 155cm	몸무게 48kg	혈액형 B 형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아윌 [√] 보통 [] 비대		
	머리 모양	[] 장발 [] 단발 [] 사발 / [] 곱슬 [] 파마 [√] 커트		
	착의사항	상의 흰색티	하의 청바지	신발 ○○브랜드 검정운동화
	그 밖의 특징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보호조치사 항	날짜 보호시설명	2020년 10 월 5 일 ○○가정위탁지원센터	조치 내용 대리양육 주소
가정환경(성장 과정)	1. 동거 중 아동 출산 및 홀로 양육함. - 모(정승정)는 고등학교 때 부터 후 남자친구 동거 중 첫째 정진수 출산 - 태어난 지 백일이 될 무렵, 남자친구가 가출했고 이후 연락두절 2. 결혼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 - 혼자 아동을 양육 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둘째 쌍둥이 김경민, 김경은을 출산 - 남편의 사업부도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양육 문제, 가정폭력으로 결혼 2년 만에 이혼 함. 3. 첫째 아동과 모의 갈등으로 양육어려움 호소 - 첫째 아동(정진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이 때문에 모와 잦은 갈등 발생, 모에게 꾸중을 듣고 나면 화풀이로 동생을 때려 동생들이 오빠를 무서워 함. 4. 양육의 어려움으로 아동을 외조모에게 보냄. - 모는 일반적으로 아동을 외조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보냄으로 갈등 고조됨. 5. 외조모의 양육기술 부재 - 외조모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해야할지 몰라 아동을 거의 방임상태로 둬. 아동은 외조모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서울 친구들이 연락하여 가출함.		
상담자 의견	아동과 모의 갈등이 깊어 관계개선이 필요(상담, 가족상담)하며, 외조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가정위탁(대리보호)하면서 아동상담, 가족상담 및 외조모에게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하여 원가정 복귀가 필요함.		
지도·판정	1. 모와의 갈등 지속_해결의지 부족 - 아동은 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모에 대한 반항과 갈등이 커졌고 모가 동생만 감싸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 모와 함께 살기 싫다고 거부했으며, 계속 같이 있으면 가출을 계속 할 것 같다고 함. 2. 가정환경 및 경제적 열악 - 모는 현재 상황(근무여건, 수입/집안환경,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셋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함. 3. 양육어려움 - 모는 아동과 문제 해결없이 이대로 같이 살 경우 아동을 학대할 것 같고, 아동은 가출일 일삼을 것 같아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함. 시간을 두고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외조모는 첫 손자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훈육에 대해 인지함. 상담·교육을 받으며 주변에서 도와주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금품 지급사항	모가 수입(220만원)대비 월세비용(60만원), 부채비용(1억원) 등을 감안하여 아동의 쌍둥이 동생에게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등 지원 연계, 부모상담 교육 참여 필요함. 외조모는 가정위탁신청을 통해 양육보조금 신청, 초기정착지원금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아동의 수급권자 책정,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상담 지원 필요		
		작성일	2020년 10월 5일
상담소명 청주시청	상담자 직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성명 박진영	(서명 또는 인)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 유기 ☐ 미혼부모·혼외자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 이혼 ☐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182신고 ☐ 유 ☐ 무			
아동 (학대피해아동)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지				연락처(집/휴대전화)		
	실거주지						
보호자 (아동학대 행위자)	관계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지				연락처(집/휴대전화)		
	실거주지						
	직업	월수입	생활 수준 원 ☐ 상 ☐ 중 ☐ 하 ☐ 수급자		주거구분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주택 ☐ 무상임대 ☐ 기타()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한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조손가구 ☐ 미혼모부가구 ☐ 공동체가구 ☐ 기타()						
	☐ 장애인가구 ☐ 북한이탈주민가구 ☐ 다문화가구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동거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경제		☐ 교육		☐ 고용		
	☐ 기타()		☐ 가족관계		☐ 사회적관계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경제		☐ 교육		☐ 고용			
☐ 기타()		☐ 가족관계		☐ 사회적관계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관찰된 보호자 특성:							

보호계획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 상담·지도 ☐ 연고자 대리양육 ☐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 전문치료기관·요양소 ☐ 입양 ☐ 기타 :		아동 양육상황 점검 주기	☐ 개월
			원가정 점검 주기	☐ 개월
	보호조치 일자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명
원가정 지원(복귀) 계획	☐ 상담 ☐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기타 () ※중복체크 가능			
	자원 내용			
담당자 의견				
수립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필요시 변경계획수립)
작성목적	- 아동을 친부모 등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아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피해아동보호계획 같은 경우 -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같음 - 필요시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활용방법	원가정의 보호기관 서비스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종료(친가정 복귀)시점까지

2) 작성예시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 아동학대 ☐ 유기 ☐ 미아 ☐ 비행·가출·부랑 ☒ 미혼부모·혼외자 ☐ 부모 빈곤·실직 ☐ 부모 사망 ☐ 부모 질병 ☐ 부모 이혼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182신고 ☐ 유 ☒ 무				
아동 (학대피해 아동)	성명 김소희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2015년 7월 17일	
	주민등록주소지 경기도 수원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연락처(집/휴대전화)		없음	
	실거주지 동일					
보호자 (아동학대 행위자)	관계 모	성명 김지영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1997년 9월 18일
	주민등록주소지				연락처(집/휴대전화)	
	실거주지				010 - 〇〇〇〇 - 〇〇〇〇	
	직업 무직	월수입 0 원	생활 수준 ☐ 상 ☐ 중 ☒ 하 ☐ 수급자		주거구분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주택 ☐ 무상임대 ☐ 기타()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한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조손가구 ☒ 미혼모부가구 ☐ 공동체가구 ☐ 기타() ☐ 장애인가구 ☐ 북한이탈주민가구 ☐ 다문화가구					
가족사항	관계 외조모	성명 한 명 순		생년월일 1970년 8월 8일 (50)		직업 파출부
						동거여부 ○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 1]안전 ☐ 2]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 3]경제 ☐ 3]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안전에 문제, 아동 연령에 맞지 않은 발육상태, 아동의 어린이집 잦은 결석, 주의 집중력 부족, 모와 갈등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안전 ☐ 1]건강 ☐ 4]일상생활 유지 ☐ 3]가족관계 ☐]사회적관계 ☐ 2]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 관찰된 보호자 특성: 모(김지영)의 정신적 건강(우울증 치료)으로 일상생활 어려움,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외조모에게 의지하며 생활함. 이로 인해 외조모와 갈등관계임				
보호계획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 상담·지도 ☐ 연고자 대리양육 ☒ V]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 전문치료기관·요양소 ☐ 입양 ☐ 기타 :		아동 양육상황 점검 주기	[3] 개월	
			원가정 점검 주기	[6] 개월	
	보호조치 일자	2020.10.23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시설)종류: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명	
	안전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안전한 주거공간 유지	가정위탁(2년) 보호	
	건강	건강검진 및 영양제 섭취	또래 아동 성장발달도달	식단관리, 영양제 섭취, 운동(주3회 이상)	
	교육	주의집중력 및 학습진단	학습지원	아동학습지원 및 학습도우미 지원	
	경제	디딤씨앗통장가입	디딤씨앗통장 매월 유지 (1년 96만원)	디딤씨앗통장 관리 지속으로 자립을 위한 저축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책정	수급비로 생활지원	안전한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생활지원	
원가정 지원(복귀) 계획	☒ V]상담 ☒ V]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 V]기타() ※중복체크 가능				
	지원 내용 심리정서지원(우울증 치료)약 6개월~1년까지 지원, 추후 아동이 가정을 복귀하게 되면 아동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기적 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아동양육 기술, 가족상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비 책정 등 지원				
담당자 의견	보호자의 정신적인 문제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우울증 치료에 집중하며 이후 아동양육기술, 가족관계 기술 교육이 필요함.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조치(가정위탁)를 위해 수급비 책정 및 아동 연령에 맞는 학습 및 기타 지원 필요, 이후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보호자 상담, 면담이 필요함.				
수립일	2020.10.23				
소속 경기도 수원시청	직급(직위) 아동보호전담요원	성명 정진영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양육상황 점검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일	년 월 일		관리번호			
아동정보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호조치 (아동복지법15조)			보호기관		
	보호시작일	년 월 일		보호기간	[] 개월	
	점 검 일	년 월 일 (차)		담당자		
개별보호· 관리계획점검	아동의 상황		〈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현 상황관련 내용 기술〉			
	육구영역	목표		서비스 내용 (계획)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육구점검 및 평가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단기	장기			
	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아동의 만족도 (보호조치, 서비스 등)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 기술〉		
원가정점검	[] 아동의 원가정방문 ()회 [] 외부장소 만남 ()회 [] 전화 ()회 [] 기타 ()회 총 [] 회		
	아동과 보호자 간의 관계향상 정도	〈보호자와의 만남이후 아동의 심리·정서적 변화 정도〉	
	원가정지원내용	〈원가정 지원계획 대비〉	
	보호자 변화정도	〈아동분리원인의 해결정도, 아동과의 만남이후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변화 정도〉	
점검 후 조치계획	① 현 보호 유지 ② 보호계획 변경() ③ 보호조치 변경() ④ 보호종결([]연령도래 [] 원가정복귀 [] 기타())		
담당자 소견	〈조사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 의견 작성〉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아동 분리 보호조치 이후 1차(1개월이내), 3개월 주기로 실시 - 보호 중 아동의 다른 욕구 발생시(서비스 변경 고려) - 보호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년경과 이후 매1년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必)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호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재평가)
작성목적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의 제공서비스 및 아동 변화 정도 점검 원가정 점검을 통한 가정복귀 적정시점, 가족 변화 정도 파악
작성방법	- 아동, 친부모(보호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상담(유선, 대면 등)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항목 기록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기반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여부 등 ※ 필요시 아동, 친부모 상황점검표 활용
활용방법	보호계획 변경,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등

2) 작성예시

양육상황 점검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년 월 일	관리번호	아동의 관리번호 자동부여
아동정보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호조치 (아동복지법1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호유형 기재(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보호유형 과 달라질 수 있음) 예) 가정위탁, 양육시설	보호기관
	보호시작일	년 월 일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기관 조치일	보호기간
	점검일	점검일자 및 회차 기재 년 월 일 (차)	담당자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아동 담당자 (상담원, 생활복지사) 성명 기재

개별보호· 관리계획점검	아동의 상황	〈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현 상황관련 내용 기술〉 ○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조치된 이후 현 상황 및 생활에 대한 내용 기재(신체변화, 심리·정서 상황, 교육 상태 등)				
	육구영역	목표		서비스 내용 (계획)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육구점검 및 평가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단기	장기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아동에 대하여 육구영역별(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등)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육구 점검 및 평가						
아동의 만족도 (보호조치, 서비스 등)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 기술〉 ○ 아동 면담을 통해 보호조치, 보호기관 생활(육구영역별)에 대한 만족도,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만족도 상담 후 작성					
원가정점검	[V] 아동의 원가정방문 (1)회	[V] 외부장소 만남 (1)회	[V] 전화(2)회	[] 기타 ()회	총 [4] 회	
	아동과 보호자 간의 관계향상 정도	〈보호자와의 만남이후 아동의 심리·정서적 변화 정도〉 ○ 원가정과의 만남 상황에 대해 관계향상 정도 기재, 부모를 만나고 아동의 심리, 정서적 변화상황 체크(아동의 변화에 대해 보육사, 상담원, 위탁부모를 통해 확인 가능)				
	원가정지원내용	〈원가정 지원계획 대비〉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원가정 지원계획의 정도 및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기재				
	보호자 변화정도	〈아동분리원인의 해결정도, 아동과의 만남이후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변화 정도〉 ○ 아동과 분리된 원인의 해결정도 체크, 보호자의 육구조사 결과 변화정도, 친부모상 황점검 시 부정적 항목의 변화정도 체크, 아동과의 만남 시 심리, 정서적 변화정도 체크(보육사, 상담원, 위탁부모를 통해 확인 가능)				
점검 후 조치계획	① 현 보호 유지 ② 보호계획 변경() ③ 보호조치 변경() ④ 보호종결([]연령도래 [] 원가정복귀 [] 기타()) ○ 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에 따른 종합적인 결과 기재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경우 현 보호 유지로 체크(①현 보호 유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보호계획 변경 및 서비스 계획 점검 실시(②보호계획 변경)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아동이 현 보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변경을 하며,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본 사례를 상정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함(③보호조치 변경). ○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연령도래로 종결할 경우 보호조치 종결이며,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호조치를 종결함(④ 보호조치 종결).					
	담당자 소견	〈조사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 의견 작성〉 ○ 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사항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소견 ○ 객관적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일				0000.00.00
이동 성명(성별)	생년월일(연월)	보호자성명(성별)	생년월일(연월)	
보호유형	보호기관(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보호시작일	담당자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예	아니오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장애종류() ☐ 질 환 명:	예	아니오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직업: ☐ 근로시간	예	아니오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만원 ☐ 부채: 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예	아니오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예	아니오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예	아니오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예 아니오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예 아니오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아니오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예 아니오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 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분리 보호된 아동이 종결(원가정 복귀) 시
작성목적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전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원가정 복귀의 적합성 여부 판단
작성방법	친부모 면담(가정방문) 등 통해 기재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과 보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료(원가정 만남, 지원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점검 친부모 연락 및 점검사항에 대해 필요시 원가정과 보호기관 협조
활용방법	원가정 복귀 시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작성일		0000.00.00	
아동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보호지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보호유형		보호기관(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보호시작일		담당자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해당 항목에 따른 정도 및 강도 등 기재 해당항목의 횡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해야함. 특히 학대피해아동으로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면밀히 검토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면밀히 검토	예 아니오	

번호	평가항목	평가	특이사항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장애종류() ☐ 질 환 명: ※ 해당항목 체크 및 해당 장애의 등급 또는 강도, 해당 장애로 아동 양육 가능여부를 기재(사후관리 시 해당 문제로 아동양육 확인) 해당항목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예	아니오
3	부모(최소 1인)의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 ☐ 직업: ☐ 근로시간 ☐ 모 ☐ 직업: ☐ 근로시간 ※ 보호자가 작성하는 '아동양육 계획서(아동 양육의 공백 체크)' 확인	예	아니오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만원 ☐ 부채: 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 부모의 총소득금액 기재, 소득은 안정적이나 부채의 정도가 클 경우(부채팀감 방식 확인) 특이사항 기재, 소득이 불안정이나, 부채비율이 없거나 낮을 경우 '아동양육계획서' 확인	예	아니오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 해당 항목이 아동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해당 문제에 대해 치료계획 여부 확인,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예	아니오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소득대비 월세비율확인, 부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예	아니오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가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 거주지 안정, 위치, 해당 층수, 위생상태, 아동의 독립공간 등 확인(양육계획서 참고)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이전 계획 등 확인	예 아니오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 분리보호 시점 이후 아동과의 만남 정도 체크(활동 내역), 만남 이후 아동의 태도 등 확인(아동이 친부모 만남 이후 아동태도 변화는 담당 상담원(위탁부모) 확인) 서식9 '양육상황점검'에서 원가정과의 만남 및 지원 등 확인 분리보호조치 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유 작성	예 아니오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 재결합 사유 확인 재결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가정 복귀를 해야만 하는 사유 확인	예 아니오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물품, 아동의 독립 공간 여부 등 확인 아동물품 구입 필요성 및 구입계획, 아동의 독립공간이 없을 경우 주거지 활용계획, 이사 계획 확인	예 아니오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소견	○ 가정복귀 점검표는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되었다가 원가정 복귀하고자 할 때 원가정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아동의 가정복귀에 대해 담당자 의견 작성함 예) 000아동의 친모는 지난 3년 동안 노력하여 부채 탕감(70%)하였고, 수입의 50%, 2년 정도이면 부채해결 가능성을 있음. 우울증도 거의 해소되어 현재는 월 1회 병원체크하고 있음. 친모는 분기별 1회 이상 아동과 아동의 위탁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진 행했으며, 아동 복귀 시점에 맞춰 방 2칸 집으로 이사함. 가정방문 시 아동 물품 구입하여 아동을 맞이할 준비를 함. 다만 친모의 8시 귀가하고 아동은 5시에 귀가하여 공백시간에 대해 아동양육계획서를 확인한 바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용계획이 있음. 이러한 점을 볼 때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작성예시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0000.00.00

아동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15.8.8	보호자성명(성별)	조우주	생년월일(연령)	1985.6.24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과의 관계	부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길 00, 5층
보호시작일	2020.4.8	담당자	김미도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	특이사항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예 V	과거에 비해 부부싸움은 줄었으나 가끔씩 싸운다고 함.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장애종류() ☐ 질환 명:	예 아니오 V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 ☐ 직업: 트레이너 ☐ 근로시간 근로시간 12:00~11:00 ☐ 모 ☐ 직업: ☐ 근로시간	예 V	모도 1년 전부터 동네 마트에서 계약직 (10:00~17:00) 근무 시작(150만원)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300 만원 ☐ 부채: 6천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예 V	아동을 원가정외 보호하는 3년 동안 4천만원 갚음(모의 수입 전부와 부의 소득 일부를 부채갚는데 사용)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아니오 V	모는 술을 끊고 운동하며 건강회복, 그 이후 마트에서 일하게 됨.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월세: 40만원(보증금: 4,000만원)	예 아니오 V	주거지 일정하며, 부채 갚는 동시에 1년 뒤 전세로 옮길 계획임.

번호	평가항목	평가	특이사항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예 V	반2개 중 1개 아동방 사용계획, 부부가 아동과 원가 정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때 좋아하는 것 등을 확 인하여 사전에 아동물품을 구입함.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월 1회정도	예 V	분리보호 초기에는 모의 알코올 치료로 6개월간 연락 을 취하지 못했다가 모의 상태고 호전된 뒤로 평균 월 1회 만남, 아동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기 움.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V	모의 알코올에 대한 총격으로 1년정도 심리치료를 받 았고, 모의 알코올 치료 완료 후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되어 함께 살기 원함.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예 V	모는 병원 입원 6개월, 통원 6개월 후 일상생활 가능 했으며,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 육 및 모임에 3차례정도 참여함. 경제활동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아동을 양육할 준비를 함.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부모는 양육상황점검 결과 원가정 복귀가 가능함. 특히 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에 집중하며 완치 후 부모교육 및 경제활동까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역할 함. 다만 부부싸움이 가끔씩 있다고 하여 관련 상담지원 및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필요할 것임.		

서식 11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원가정의 보호기관 공통서식(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환경 조사서’ 별도 작성)

○○○○기관

수 신 : ○○ 시장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세			보호조치일	0000. 00. 00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 예정자	성명				성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			아동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기타(아동과의 지속적인 만남 정도 등)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의견	아동의 의사(부모와의 관계 포함)					
	거주예정 가정환경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원가정의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작성일 0000.00.00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시기	분리보호 된 아동의 종결(원가정 복귀) 시(재평가)
작성목적	원가정의 점검 및 아동의 복귀 의사 확인
작성방법	원가정의 보호기관 아동 담당자는 보호예정자의 면담(가정방문)을 통해 작성 아동의 의사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정 복귀 의견 청취
활용방법	가정복귀 점검표, 종결심사서 등

○○○○기관

수 신 : ○○ 시장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	○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 현나이, 보호조치일 기재 ○ 현재 보호되고 있는 시설명(주소) 기재
보호 예정자	○ 보호자의 성명, 성별, 거주상태(자가, 전세, 월세) 아동과의 관계(예)부, 모, 백부 등) 기재 ○ 수급여부 및 분리 보호되어 있는 동안 아동과의 만남정도(횟수, 정기적/비정기적), 아동이 원가정 복귀될 주소 기재
가족 관계	○ 복귀될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등 기재
의견	○ 아동의 의사 : 가정 복귀를 원하는지, 부모와의 관계 및 감정 등을 확인 후 기재 ○ 거주예정 가정환경 : 방 갯수, 크기, 위치(안전여부, 층수), 아동물품 등 준비상황 등 기재 ○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 아동양육상황 점검표 내용 확인(직업, 수입, 근로시간), 아동 양육태도(양육태도 점검리스트 질문 확인) ○ 원가정의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 아동과 부모의 변화정도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담당자 의견 기재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내용 및 최종 평가를 기재	
작성 완료일자 기재	

2) 작성예시

○○○○기관

수 신 : ○○ 시장

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	아동명	추효현		성별	여	
	생년월일(연령)	2010. 8. 4(11)세		보호조치일	2018. 4. 9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길 000 3층				
	보호시설명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 예정자	성명	추성민		성별	남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		아동과의 관계	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		기타(아동과의 지속적인 만남 정도 등)	분기별 1회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길 000 3층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추성민	남	40	부	경찰	
	공은미	여	39	계모	교사	
	추자연	여	5	동생	○○어린이집	
의견	아동의 의사 아동은 부에 대한 원망(부모이혼)이 있었으나 계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복귀를 희망함. 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아동과 만남을 지켰고, 월 1회이상 전화 통화함.					
	거주예정 가정환경 방3개, 아동방 별도, 빌라 입구에 cctv 설치되어 있음. 아동복귀 계획 일정 보름 전에 아동과 함께 쇼핑하며 필요물품 (의류, 학용품, 침구류 등) 등 구입함.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부와 계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와 계모 모두 부모교육 참여, 양육환경점검 결과 문제상황 없음.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동안 위탁부모에게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받음.					
	원가정의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부는 모와 이혼 뒤 재혼했는데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뒤 아동에 대한 양육에 대하여 걱정하였는데, 아동의 계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동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고, 분리보호된 후 1년 뒤부터 분기별 원가정과의 만남, 부모교육 참여,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2년 성장했으며, 위탁초기 6개월간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한 상태. 2년 동안 위탁부모는 아동이 미술에 관심이 높아 미술학원을 보내 미술대회 등 수상경력이 많음. 위탁부모는 부모교육에 참여, 아동과 함께 캠프, 나들이에 매년 참여함. 원가정 만남 시 아동과 함께 친부모 만남 동행하며 친부모에게 양육기술, 아동의 정보를 제공함.						
작성일 2020.07.17						

종결심사서

관리번호		보호유형	
보호시작일	년 월 일 ()요일	종결심사일	년 월 일 ()요일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 연령도래 ☐ 기타()		
구분	평가영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재평가 등 과정 등 종합하여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종결사례평가	<서비스 제공과정, 양육환경 조사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		
사후관리계획			
기타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 성 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분리보호 된 아동의 종결 시(재평가)
작성목적	아동의 보호를 종결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작성
작성방법	양육상황점검, 가정복귀 점검표, 아동복귀 의견서(원가정외 보호기관)를 바탕으로 작성, 아동 담당자(상담원), 친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통해 기재
활용방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하여 종결심의, 사후관리 시

종결심사서

관리번호	아동의 관리번호 자동부여	보호유형	현재 보호되고 있는 유형 기재 예)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시작일	년 월 일 ()요일	종결심사일	년 월 일 ()요일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 연령도래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구분	평 가 영 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재사정 등 과정 등 종합하여 작성> ○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수립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의 일치성, 재사정 단계(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및 평가)확인 후 작성 ○ 아동이 장기 보호되었다가 종결할 경우 최종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만 작성 ○ 원가정외보호기관에서 작성한 가정복귀 의견서, 양육상황점검표를 바탕으로 작성		
종결사례평가	<서비스 제공과정, 양육환경 조사 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 ○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과정(원가정외 보호기관), 가정복귀 의견서(원가정외 보호기관), 양육계획서(보호자), 양육상황점검표(가정복귀점검표,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을 바탕으로 작성		
사후관리계획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 1년 이내 4회 사후관리 계획 등 내용포함 ○ 연령도래로 종결하는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 계획(5년) 등 포함(자립지원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주택마련, 취업, 학업 등) 작성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 작성예시

종결심사서

관리번호	DB20170301-038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시작일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종결심사일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 연령도래 ☐ 기타()		
구분	평가영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재사정 등 과정 등 종합하여 작성〉 ○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로 1년 동안 심리치료 후 회복됨. ○ 위탁부모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음 위탁부모 누나로부터 학업지도로 학업성적 약20%로 상승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 부는 재혼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대한 고민 중 계모가 아동의 가정 복귀에 찬성하여 정기적 만남(분기 별 1~2회 정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참여,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환경 점검함. ○ 부(교사)와 계모(보험설계사)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와 계모 모두 부모교육 참여, 양육환경점검 결과 긍정적 평가항목이 8개로 원가정 복귀 가능하다고 판단함. 또한 아동과의 만남시 위탁부모로부터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 받음. ○ 위탁부모가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함.		
종결사례평가	〈서비스 제공과정, 양육환경 조사 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 ○ 가정위탁 배치시 초기정착금으로 아동가구, 의류, 학용품 등 구입,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 등 구입함. ○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결을 위하여 1년 동안 심리치료 받음(위탁부모와 상담원이 교대로 함께 참여함) 특이사항 발견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위탁부모와 상의하며 아동을 양육함. ○ 위탁부모는 부모교육 참여 및 가정위탁 캠프, 나들이, 송년의 밤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연 3회 이상). ○ 00기업후원으로 아동에게 매월 5만원씩 결연지원금을 위탁부모는 아동통장에 모두 저축함.(종결시 약 200만원) ○ 아동이 분리보호되어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개별보호·관리계획 거의 달성 95%되었으며, 부모 이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여 원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평가함.		
사후관리계획	○ 원가정 복귀 1개월 뒤 가정방문예정(아동 가정환경 조사 및 부모의양육태도 점검) ○ 아동과의 상담하여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검, 다음 방문 고지(3개월 뒤) ○ 아동의 통장관리 및 용돈관리 점검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정보 제공 등		
		작성일	2020년 2월 13일
소속 ☐ 시청	직급(직위) 아동보호전담요원	성명	최서희 (서명 또는 인)

양 육 계 획 서

☐ 귀가 아동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입소시설명 (위탁→입양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비고

☐ 귀가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 양육계획

☐ 주거계획

☐ 자가	☐ 전세(임대)	☐ 소유
아동과 함께 생활 할 거주지 주소 :		

☐ 생활비 조달계획

직업: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자영업 ☐ 기타()
월 수입:	출퇴근 시간 ()
현재 수입 없는 경우 양육비 마련 계획 :	

☐ 양육계획

- 교육 계획
 - 등·하교(원) 계획 :
- 주변에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 이 외 보호자의 기타 양육 계획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 해당 정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위탁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작성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자	보호자
시기	보호자가 아동을 원가정 복귀하고자 할 때
작성목적	아동의 분리보호를 종결 시(원가정 복귀) 보호자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지확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정 시 참고 자료
작성방법	보호자가 아동을 원가정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 원가정외 보호기관은 보호자가 아동을 원가정 복귀할 의사를 밝힐 경우 '양육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활용방법	가정복귀 의견서(원가정외보호기관), 아동양육점검(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정복귀 심의 시 참고자료, 사후관리 시 활용 가능

2) 작성예시

양육 계획서

□ 귀가 아동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명 (위탁→입양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비고
백민지	2015.5.11	무지개보육원	자녀	

□ 귀가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이수연	1990.7.21	전남 목포시 ○○동 ◇◇-◇	

□ 양육계획

○ 주거계획

☐ 자가	☒ 전세(임대)	☐ 소유
아동과 함께 생활 할 거주지 주소 : 전남 목포시 ○○동 ◇◇-◇		

○ 생활비 조달계획

직업: 미용사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자영업 ☐ 기타()
월 수입: 250만원	출퇴근 시간 (10:00~21:00), 주6일 근무
현재 수입 없는 경우 양육비 마련 계획 :	

○ 양육계획

• 교육 계획

- 등·하교(원) 계획 : 등하원은 인근에 사는 외조모가 돕기로 했으며, 평일에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 주변에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 외조모가 인근에 거주(☎010-xxxx-xxxx), ▽▽건강가정지원센터 ○○ 선생님(☎ 061-321-1234), ○○동 고교 친구(같은 미용업에 종사하며 자주 만남, ☎061-234-2345)
- 이 외 보호자의 기타 양육 계획 : 복귀 후 3개월동안 아동과 함께 상담에 참여할 예정이며, 쉬는 날에는 아동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못했던 것들을 아동과 상의하여 할 것입니다.

2020년 11 월 4 일

신청인 : 이수연 (인)

※ 해당 정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위탁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작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회의종류	☐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결정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총 명				
회의내용					
의결사항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변경				
	보호종료 결정				
특이사항 등					

1)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 성 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아동을 분리보호조치 시,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보호종료 시(재평가)
작성목적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과정 기록
작성방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시 안전 요약정리
활용방법	아동의 분리조치, 변경, 종결 결정의 근거 자료

2) 작성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20.10.7.(수)		회의 장소	○○시청 회의실 3층
회의종류	■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결정			
안건	보호조치 결정(3명) 시설폐쇄로 인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4명)			
참석자	고용기 위원장(☆☆대학교), 이수형 부위원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최은희 위원(■□보육원장), 임경숙 위원(□□그룹홈센터장), 김대철 위원(◇◇대학교), 소병국 위원(☆☆초등학교장), 이민아 위원(◎◎시청 아동보호팀장) 총7명			
회의내용	○ 신규 보호배치 결정 및 00시설 폐쇄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함. ○ 아동별 개별보호·관리계획 및 양육상황점검을 토대로 아동의 보호조치 의견 제시 ○*○ 아동(4세) 부모교통사고 사망으로 조부모 및 친척 부재, 아동연령이 4세,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치료 필요,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일반가정위탁보호 판단_00지역에 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위탁부모 계심(40세, 친자녀 1명, 보험회사 근무) ①*① 아동(16세) 한부모가정, 잦은 가출, 모의와의 갈등 및 통제 어려움, 모의 건강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양육의 어려움 호소_00청소년그룹홈 시설 또는 양육시설 보호 필요 ◎*◎ 아동(2세) 미혼모 아동, 모이 건강악화(병원 입원 및 신장이식 필요)로 양육어려움 호소_아동 연령 고려하여 가정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함_○○지역에 사시는 백부(51세, 친자녀 1명_대학생, 화사운영) 확인 아동양육의사 확인_친인척위탁으로 책정필요 ①*① 아동(17세) 00시설폐쇄 및 아동연령과 학교위치 고려하여 00그룹홈 입소필요(시설 정원 확인 및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 고려 필요) ●*● 아동(12세) 00시설폐쇄 및 아동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가 확인되어 아동의사 확인(멀리 이사갈길 원함)하여 타 00시에 있는 00시설 확인 및 입소 가능확인 ●*● 아동(6세)과 ■*■ 아동(6세) 쌍둥이로 00시설폐쇄, 아동 연령 고려, 일반가정위탁 필요_최근 양육하던 위탁아동 원가정 복귀하여 현재 부부만 생활하는 위탁부모 계심_의사 확인한바 아동양육의지 확인(54세, 친자녀 타 시도에서 직장생활 중, 부부만 생활함) ‘친해지기 바래’ 프로그램 참여 예정 ※ 참고자료 : 아동별 개별보호·관리계획, 양육상황점검			
의결사항	보호조치 정	가정위탁 2건(○*○(일반), ◎*◎(친인척)) 양육시설 1건(①*①)		
	보호조치 변경	양육시설→ 가정위탁 2건 양육시설→ 그룹홈(1건) 양육시설→ 양육시설(1건)		
	보호종료 결정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등	시설 폐쇄로 아동 보호조치 변경, 시설아동 중 형제배치로 가정위탁으로 변경			

(앞쪽)			
보호결정(변경) 통지서			
대 아 상 동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 호 시 설 (기 관)	보호유형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입양		
	시설(기관)명		
결정(변경) 일자		조치 일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아동·보호자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보호기간 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처리 시 현재 가정 내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입소 후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으로 전학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적응 등으로 인해 전학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에 교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아동은 입소한 시설 내 생활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규칙은 시설마다 상이함(휴대폰 사용 금지 등)
5. 시설 입소 후 보호자의 아동면회가 아동의 시설 부적응 및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아동에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의 동의를 통해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입소한 시설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을 재확인하여 전원조치될 수 있습니다.
8. 추후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정복귀점검 등)에 따라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1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정위탁 또는 입소 연월일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퇴소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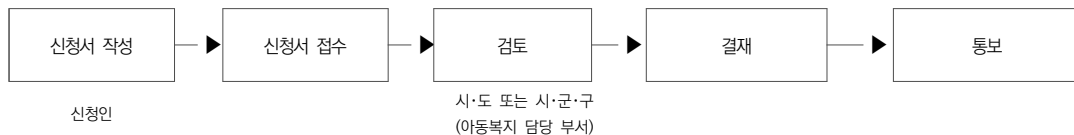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

서식 17 아동 가정복귀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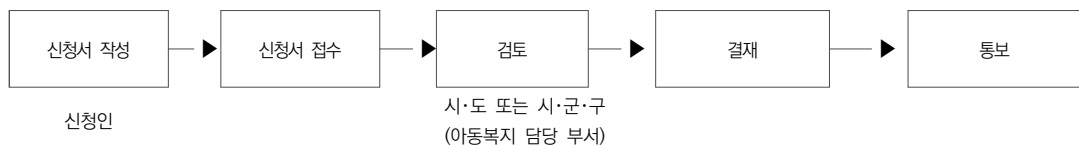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재산	부동산 [대지 : m ²] [건물 : m ²] [기타 :] 동산 원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희망아동	성별 []남 []여	나이 세	그 밖의 희망사항	
	지정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시설명(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보호 구분	[] 무상 대리양육 [] 유상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 입양전 가정위탁		
	보호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소 약도

4

신청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 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신청인 작성

접수

검토

- 신청인 가정 조사
- 보호대상아동 조사

통보

결재

서식 19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재산	부동산 원	동산 원	

가족관계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동기

가정환경

특기사항

조사자 의견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20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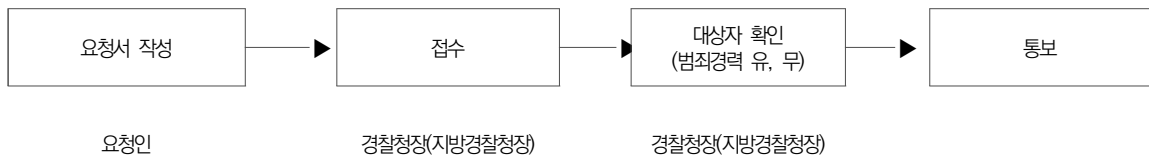
경찰청장(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 21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 22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여권번호 등록번호	경우: 국적과 또는 외국인	
	주소				
아동 대상 성범죄		[] 있음	[] 없음		
성인 대상 성범죄		[] 있음	[] 없음		
가정폭력 관련 범죄		[] 있음	[]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있음	[] 없음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한함)		[] 있음	[] 없음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위탁부모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추천자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폰번호	
	주 소		관계	
	추천사유			

본인은 위탁부모와 ____년 ____개월 동안 알고 지내고 있으며, 상기 위탁부모는 위탁부
모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1.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위탁유형 : ☐ 대리양육위탁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 15조에 의하여 아동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연 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27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위탁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위탁유형	☐ 무상 대리양육 ☐ 유상 대리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 ☐ 입양전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위탁아동과의 관계				
발급용도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위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대상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탁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장신청 정보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보호 연장기간	
	보호 연장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아동(가정)방문 ☐ 시설·기관 내방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주기	☐ 년1회 ☐ 6개월마다 ☐ 3개월마다 ☐ 기타 _____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해당 아동은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아동은 퇴소 후 자립수준평가(자립상태점검)에 응하고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권자 : (서명또는 인) 동의획득자 : (서명또는 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시설 입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입소 (이용) 시설 안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장애인 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타()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타()						
	기타							
입소 (이용) 사유								
통지 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아 동 입 원 (입 소) 의 료 서				
입 원 (입소) 의 료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보 호 시 설 (기관)	시설(기관) 명 칭		시설(기관)의장 성 명	
	소 재 지			
입원(입소)의뢰 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을 귀 시설(기관)에 입원(입소)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 개시일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 연월일
	공고 결과	부양의무자 출현 [] 있음 [] 없음	(의견)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 아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유의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입 양 동 의 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입양특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_____에게 입양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성명 (서명 또는 인)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분	☐ 배치결정 ☐ 보호방식변경 ☐ 원가정 복귀 ☐ 입양 ☐ 기타(가정법원허가신청 등)			
내용	·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사유	· 상황 변경 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			
계획	·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기록			
「입양특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입양동의 철회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입양기관보관용
시군구제출용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 아동의 부모인 ○○○, ○○○는 가정방문/면담(으)로 xx(입양기관), ○○○(으)로부터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년 월 일

부 : ○○○ (인)

모 : ○○○ (인)

서식 37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1호]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 등	성명				성별	남·여	연령		
	소재지								
	연락처								
	중요특징								
신체 및 외적사항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착의사항			그 밖의 신체특징
	cm	1. 야윌 2. 비대 3. 보통	1. 둥근형 2. 긴 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 장발 2. 단발 3. 삭발	1. 곱슬 2. 파마 3. 카트	상의	하의	신발	
신고 내용									
처리 결과									
신고자	성 명								
	소 속								
	주 소								
	연락처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 직급(위) : 성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 명		성 별		번호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cm×4cm)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역 10. 종교시설(교회·성당·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					주소 :									
	입소(원)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사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종
신 체 특 징	치 아		번호 ()	1. 정상 2. 틀니 3. 빠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얼 굴 색		번호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흉 터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점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장애 유형		번호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급, 급) 5. 기타()				
	신 장	cm	체 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두 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연색 6. 기타	두 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체 중	kg	번호 ()	5. 특이체형 6. 기타 ()	번호 ()	5. 둥근형 6. 가름한형 7. 기타()	번호 ()	번호 ()	번호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1. 채취 2. 미채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옷차림 · 소지품 · 그 밖의 정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전체 옷차림	번호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족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13. 알 수 없음			
		상의	번호 ()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16. 알 수 없음		
				2. 반팔			
			번호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15. 알 수 없음			
			번호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하의	번호 ()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12. 알 수 없음		
				2. 짧은			
			번호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15. 알 수 없음			
			번호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13. 알 수 없음			발길이	mm
		번호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안경	번호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볼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모자	번호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소지품	번호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상세설명()			상세설명()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성 자	작성일	년 월 일	작성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			
				연락처 :			
			관할경찰서명				

서식 39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 적 사 항	성명				성별	번호 ()	1. 남 2. 여	주민등록번호	-			출생신고 당시 사진 부착 (3cm × 4cm)				
	주소															
	출생 일자	년 월 일														
	출생 장소	1. 자택 : 시(도) 구(군) 동(읍, 면)														
		2. 병원(병원명 : 담당의 : 전화 :)														
		3. 기타()														
	아 동	신 체 특 징	치아	번호 ()	1. 정상 2. 틀니 3. 빠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치아 특징	서술:		
			눈모양	번호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얼굴색	번호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흉터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수술 자국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점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장애 유무	번호 ()	1. 유 2. 무		장애 유형	번호 () 예) 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지장애(급, 급) 5. 기타()								
		신 장	cm	체 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가름한형 7. 기타 ()	두 발 색 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두 발 형 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체 중	kg	번호 ()	번호 ()	번호 ()
그 밖의 특징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 모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비고
	부					
	모					
신고인	성명			신고일자	년 월 일	
	아동과의 관계	번호 ()	1. 부 2. 모 3. 동거친족 4. 기타()			
	주소				전화번호	
출생신고 기간경과 사 유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					
작성자	작 성 연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별지 제4호서식]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인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관련사항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실종 년월일			
	발견일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후견인 지정 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사진 3cm×4cm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 여	
			연령	세	
	주소				
	특징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 와의 관계		
보호시설	시설명		대표자		
	보호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후견인	성명				
	주소				
참고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개별보호·관리계획서)

I. 아동 기본 정보						
피해아동 (아동)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연락처(집/휴대전화)			
	실거주지					
아동학대 행위자 (보호자)	관계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연락처(집/휴대전화)			
	실거주지					
	직업	월수입 원	생활 수준 []상 []중 []하 []수급자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가족유형	[]일반가정 []부자가정(사별) []부자가정(이혼) []부자가정(기출) []부자가정(별거) []모자가정(사별) []모자가정(이혼) []모자가정(기출) []모자가정(별거) []미혼부가정 []미혼모가정 []미혼부모가정 []친부+계모 []친모+계부 []친인척보호 []친 부+동거녀 []친모+동거남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동거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II. 사건 및 조치 정보						
사건개요 (피해아동)	신고접수일시		신고접수경로			
			[] 112		[] 129	
			[] 행정전화		[] 내방	
	신고접수내용					
	아동학대조사내용					
	사례판단결과 (중복체크 가능)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방임유형 :)		
사례판단 소견						

보호계획	피해아동 조치계획			
	[] 보호체계 유지			
	[] 사례관리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 드림스타트 [] 읍면동서비스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 (아보전명:)			
	[]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 상담·지도 [] 연고자 대리양육 []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 전문치료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요양소 [] 입양 [] 기타 :		아동 양육상황 점검 주기	[] 개월
			원가정 점검 주기	[] 개월
	보호조치 일자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1호(제지) [] 2호(격리) 응급조치 일시		[] 3호(보호시설 인도) (보호시설명:) 응급조치자	
	[] 4호(의료기관 인도) (병원명:)			
	[]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임시보호명령	
	청구일자 []	청구(결정)법원 []		
	결정일자 []			
	결정결과 인용 [] 기각 []			
	[] 1호(퇴거·격리) [] 2호(접근금지) [] 3호(전기통신금지) [] 4호(보호위탁) [] 5호(치료위탁) [] 5의2호(상담·치료위탁) [] 6호(가정위탁) [] 7호(친권행사 제한·정지) [] 8호(후견인권한 제한·정지) [] 9호(의사표시 갈음결정)			
	아동학대행위자 조치계획			
	[] 지속관찰			
	[] 법적조치 및 관리			
	[] 고발 [] 고소 [] 인지수사 사건담당 경찰서(검찰) 사건처리결과 [] 수사중 [] 내사종결 [] 송치			
	[]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 1호(격리) [] 2호(접근금지) [] 3호(전기통신금지)			
	[]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15조)			
	요청(신청)일자 []			
	결정일자 []			
	결정결과 인용 [] 기각 []	결정법원		
	[] 1호(퇴거·격리) [] 2호(접근금지) [] 3호(전기통신금지) [] 4호(친권·후견인 제한·정지) [] 5호(상담·교육) [] 6호(의료기관 등위탁) [] 7호(유치장·구치소 유치)			
[] 친권 제한·상실(아동복지법 제18조)				

	☐ 친권행사 제한 ☐ 친권상실			
	☐ 기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타 시설 또는 쉼터입소 (시설 또는 쉼터명:) ☐ 가출 ☐ 이 외 ()			
	☐ 가정복귀			
	종료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III. 대상자 지원 정보				
대상자 욕구 (욕구조사결과)	아동의 욕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보호자의 욕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				
대상자 지원 계획	개입필요 욕구·문제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명
가정복귀 지원계획	☐ 상담 ☐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기타 ※중복체크 가능			
	지원 내용			
담당자소견				
수립일		통보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가. 가정복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동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경우 동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및 가정복귀가 진행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 (친인척 가정위탁, 대리양육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이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절차에 따라 아동 및 보호자의 전반적인 양육 환경 및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가정복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나. 가정복귀 절차

① 아보전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절차) △아동 및 보호자 의사 확인 △가정복귀 기본요건 확인 △양육환경점검(심리평가 및 면담, 가정환경조사, 가정복귀 계획 수립)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확인서발급 등 진행 (약 3개월 이상 소요)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 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기능 유지 등을 위해 진행되는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발급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 해당 절차에 거부·회피 하시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가정복귀 신청

(신청) 아동입소중인 쉼터 또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

(구비서류)

- 아동귀가신청서
-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확인서

③ 시·군·구 가정복귀
여부판단 결정

④ 아보전 사후관리

(신청인)

아동가정복귀 이후 아동 안전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상담(유선,방문등) 진행협조

다. 사후관리 안내

1.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가정복귀 진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안전여부 확인 위한 아동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상담(유선 또는 방문)이 진행됩니다.
2.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시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 또는 문제해결 위해 본 기관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절차에 대해 동의하고, 위 절차에 따른 귀 기관의 조치에 대해
적극협조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 2020 - 00호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자 인적사항

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 소재지	입소시설명	비고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비고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기간 및 결과

일자	대상	진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01.03	아동	서울아보전	1회기 : 가족의 의미
01.10	아동	서울아보전	2회기 : 재결합 관련 정서 다루기
01.12	공통	서울아보전	1회기 : 기관 내 만남
01.03	보호자	은평아보전	1회기 : 아동에 대한 이해

본 대상자는 00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과정을
성실히 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00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가정환경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담당자				제출일자	
아동 (귀가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전화번호
	교육기관 명		기타		
	학교	학년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날짜		
보호시설 명					
보호자 (귀가신청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소득(월수입) 원	생활수준 []일반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 점검결과 내용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란에 √ 체크					
아동 및 보호자 심신상태	[1.아동]				
	1-1. 심리평가 및 면담 실시 결과 (심리정서상태)				
	☐ 실시 - 검사기관명 : - 검사일자 : - 관련 심리 평가자 소견 작성 : ☐ 미실시 (사유기재) / (미실시한 경우 1-2문항 체크하지 않음)				

양육 환경	[1. 보호자 요인]
	1-1.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내용 및 결과
	☐ 이수 - 프로그램 진행기간 : ☐ 미이수 (사유작성)
	1-2. 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여의지 및 태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1-3. 검찰처분·법원 명령 결정에 따른 이행 결과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없음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있음 - 결정내용 : - 이행내용 :
	1-4. 보호자가 학대가 발생했던 당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
	- 긍정적 변화 내용 기재
	1-5. 양육 계획
	- 교육계획 · 교육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 등,하원(교) 계획 : · 방과 후 계획 : - 아동이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계획 :
	1-6. 다른 보호자 여부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있음 -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사 확인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없음
	[2. 환경 요인]
	2-1. 가정 내 청결 상태 (※ 사진 필수 첨부)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2. 양육 환경 조성 정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종합 소견	- 아동보호솔루션회의 결과 및 담당자 소견 (가정환경 확인 위해 파악 및 수집한 모든 자료 첨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15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상황 :)	예 ☐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아동위원 제도 운영

1. 목적

-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아동 발굴·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 아동위원을 두어야 함(아동복지법 제14조)

참고 아동위원(아동복지법 제14조)

-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운영 방안

-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위원은 시·군·구 단위로 위촉·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운영 가능
- (대상)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이 있는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직원, 전·현직 교사 및 경찰관, 시·도 사회복지위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급식이나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단체 소속 인사, 가정위탁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지역사회 내 아동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규모) 지역 여건, 아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업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 관련 업무를 지원
 -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 관할 구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추가·변경 가능
-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아동위원을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참고(별도 배포)

- (운영) 아동위원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아동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및 해촉
 - 아동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또는 기타 인권 보호관으로서 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아동위원의 임기, 연임 허용 여부, 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아동위원 협의회·위원회 운영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결정하며, 지역 내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 담당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또는 위원회 내규 등을 통해 규정 가능
 - 아동급식관리위원회 등 유사 협의회·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위원회 등 활용 가능
- ※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시) 참고

참고 ○○○시(·군·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시)

※ 동 조례안은 예시이며,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운영 가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으로 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시(·군·구) 위원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 복지 관련 단체, 아동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년 이상 아동 복지나 아동 인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급식 관련 업무나 아동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 중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고, 인권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아동 복지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위원 위촉,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위원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6. ○○○시(·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관련 활동
 7. 기타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위원회는 아동복지 관련 사항,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위원회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결위나 사고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시)

② 위원회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 인구나 접근성, 아동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군·구) 아동복지담당 과장 및 ○○○시(·군·구) 읍·면·동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③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 또는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은 ○○○시(·군·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가 개요

-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아동관련 정책의 전문성 및 충실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동 복지 및 아동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 2

나 주요 기능

-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아동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체 위기에 있는 고위험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기간 연장, 지역 내 아동 정책 수립 및 시행·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전으로 발굴·심의(또는 보고)할 수 있음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 대행
- 위원장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임기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함
 - ※ 위촉 위원 중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노동관서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 전출, 퇴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다른 위원을 재위촉함
- 위원 연임 여부, 기간은 지자체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위원의 해촉

- 주체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유 :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비밀 유지 준수 의무 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등
 - ※ 해촉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르되, 조례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등 지침을 참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해촉 절차 진행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복지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지침을 참고

● 위원회 회의 개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이 있거나 심의·보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소위원회를 활용
 - ※ 아동보호와 관련된 안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긴급한 아동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先 보호 조치, 後 회의 개최'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다만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에 의해 위원회 개최 가능

● 위원장 직무 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필요가 있는 만큼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반드시 민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마 소위원회 운영

- (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지명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

- (운영)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의결에 따라 운영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법 '17.9.19 개정, '17.12.20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사항
 -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사 기타 사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성격 :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 이어야 함
 -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 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13조제2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전까지 위원회에 준하여 '아동복지심의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준하여 구성·운영
 - 전문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 조례 제정 후에는 전문위원회는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전문위원회는 해산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전문위원회 위원은 해촉·재위촉 등 조치를 취함)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019년 11월말 현재 총 58개소]

시·도	일시보호 센터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서울 1 (1/0)	서울시아동 복지센터	아동 종합시설	이현숙 (02-2040-4201)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성동)	실종아동	30	서울특별시 (기,미아, 학대피해아동등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부산 3 (1/2)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호시설	김문정 (051-583-7314)	금정구 금샘로 41	실종아동	30	부산광역시
	아이들의 집	장애아동 양육시설	최영옥 (051-542-5980)	해운대구 운봉길 135	실종장애인 (6세 미만)	41	부산광역시
	천마재활원	장애아동 양육시설	황소진 (051-247-4084)	서구 천해로 7번길 55-10	실종장애인 (6세 이상)	95	부산광역시
대구 1 (1/0)	SOS아동 보호센터	아동일시 보호시설	손해옥 (053-756-7348)	수성구 무열로 171	실종아동	30	대구광역시
인천 2 (1/1)	보라매아동 아동센터	아 동 일시보호	이계윤 (032-747-1102)	중구 백운로 528번길 57	실종아동	50	인천광역시
	동 심 원	지적장애 영 아	윤옥선 (032-818-4737)	연수구 봉재산로 68	실종장애인	50	인천광역시
광주 1 (1/0)	영아일시보호소	일시보호	강춘심 (062-222-1095)	동구 지원로 26	실종아동	50	광주광역시 3세 이하 아동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요보호 아동)
대전 3 (1/2)	성우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익자 (042-627-6800)	대덕구 신탄진로 101	실종아동	60	대전광역시
	평강의집	장 애 인 시 설	노준호 (042-620-8700)	대덕구 대화동 대화1길 2	실종장애인 (14세 이상)	77	대전광역시
	동 심 원	장 애 인 시 설	김연환 (042-581-2254)	서구 영골길 159	실종장애인 (14세 이상)	80	대전광역시
울산 2 (1/1)	울산양육원	아동 양육시설	김영숙 (052-277-5636)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능골1길 39-24	실종아동	150	울산광역시
	울산참사랑의집	장애인 거주시설	김병수 (052-252-7778)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55	실종장애인	60	울산광역시
세종 1 (1/0)	영명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김희숙 (044-857-2059)	세종시 연서면 월성로239	실종아동		세종특별시

시·도	일시보호 센 터 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경기 2 (2/0)	경기남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남궁 행 (031-445-7188)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실종아동	70	수원시 등 21개 시군
	경기북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황민숙 (031-877-2852)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	실종아동	45	고양시 등 10개 시군
강원 3 (1/2)	강원도 아동복지센터	아동일시 보호시설	박병기 (033-762-3462)	원주시 판부면 도매촌길54	실종아동	35	강원도 (24개월 이상 아동)
	남강단기 보호센터	장애인 단기보호	조영국 (033-244-1602)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255	실종장애인	10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8세 이상 발달장애아동)
	곰꾸는나무주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단기보호	이명숙 (033-766-1722)	원주시 치악로 1534번길	실종장애인	10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무연고 장애아동)
충북 9 (6/3)	충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최은희 (043-216-1391)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번길	실종아동	7	청주시, 증평군
	진여원	아동 양육시설	박현기 (043-851-6013)	충주시 동량면 화암양목길 125	실종아동	48	충주시
	제천 영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강숙진 (043-641-5413)	제천시 탑안로 424	실종아동	49	제천시, 단양군
	충북 혜능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이정순 (043-260-1590)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2길 68-14	실종아동	105	청주시
	영실애육원	아동 양육시설	김경자 (043-731-4114)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35	실종아동	75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꽃동네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이경애 (043 877-7713)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340-1	실종아동	8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베다니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안태승 (043-277-7043)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29-2	실종장애인	15	청주 등 6개 시군 (지적·자폐성 장애인)
	충주시장애인 다사랑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박보경 (043-846-3305)	충주시 사직로 142-5	실종장애인	20	충주, 진천, 괴산, 음성 (등록장애인-단체생활이 가능한자)
	세하단기보호 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우미경 (043-644-5472)	제천시 내도로 40가길	실종장애인	10	제천, 단양 (등록장애인-단체생활이 가능한자)
충남 5 (4/1)	삼 일 육 아 원	아동 양육시설	김태년 (041-572-7795)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49	실종아동	100	천안시 등 3개 시군 (미아, 학대피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도	일시보호 센 터 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충남 5 (4/1)	보령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이정은 (041-931-2335)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05	실종아동	49	보령시 등 5개 시군 (미아, 학대피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계룡학사	아동 양육시설	유창학 (041-735-0703)	논산시 연산면 화악1길 27	실종아동	95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미아, 학대피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새감마을	아동 양육시설	변명자 (041-337-4046)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81-82	실종아동	60	서산시 등 4개 시군 (미아, 학대피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성 모 복 지 원	장 애 인 시 설	안숙영 (041-543-7861)	아산시 영인면 신정리길 189	실종장애인	100	충청남도 (무연고 장애인)
전북 3 (2/1)	구세군 군산후생원	아동 양육시설	김종탁 (063-445-9331)	군산시 월명로 514	실종아동	7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정읍 애육원	아동 양육시설	서완종 (063-535-3017)	정읍시 태평7길 74-6	실종아동	80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아름다운 마을	정신장애인 시설	오순복 (063-563-7332)	고창군 상하면 풍촌길 8	실종장애인	30	전라북도
전남 4 (3/1)	목포아동원	아동 양육시설	김미자 (061-276-0078)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52호	실종아동	120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나주금성원	아동 양육시설	최성숙 (061-331-7646)	나주시 금천면 벽류길 88-4	실종아동	120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순천성신원	아동 양육시설	윤동성 (061-744-2964)	순천시 저전길 84	실종아동	90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목포광명원	장애인 생활시설	김남희 (061-462-7356)	영암군 삼호읍 신호정길 43-17	실종장애인	103	전라남도
경북 13 (12/1)	임마누엘 영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김정숙 (054-434-2821)	김천시 한일길 17	실종아동	140	경상북도 (4세 미만)
	선린애육원	아동 양육시설	박정민 (054-252-4404)	포항시 북구 삼호로 480-33	실종아동	105	포항시, 울릉군 (4세 이상)
	성애원	아동 양육시설	권기숙 (054-746-4826)	경주시 시래둑길 65	실종아동	70	경주시 (4세 이상)
	베다니성화원	아동 양육시설	김성화 (054-436-4773)	김천시 영남대로 1974번지	실종아동	88	김천시 (4세 이상)
	경안신육원	아동 양육시설	김신복 (054-858-6439)	안동시 웅정골 35길	실종아동	90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4세 이상)

시·도	일시보호 센터명	시설 종류	시설장 (연락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경북 13 (12/1)	삼성원	아동 양육시설	주옥경 (054-452-8487)	구미시 신시로 105	실종아동	100	구미시, 칠곡군 (4세 이상)
	영천희망원	아동 양육시설	이상근 (054-335-3633)	영천시 한방로 195-6	실종아동	80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4세 이상)
	상주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한영식 (054-532-4172)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1038-9	실종아동	105	상주시 (4세 이상)
	신망애육원	아동 양육시설	황영배 (054-555-2811)	문경시 영신영강길 50	실종아동	90	문경시, 예천군 (4세 이상)
	의성자혜원	아동 양육시설	박미소 (054-834-2900)	의성군 의성읍 복원3길 51-6	실종아동	124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4세 이상)
	경북기독교 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김홍기 (054-732-0426)	영덕군 영해면 원당1길 31번	실종아동	70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4세 이상)
	실로암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한정희 (054-932-3551)	성주군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4	실종아동	60	성주군, 고령군 (4세 이상)
	안동애명복지촌	장애인 생활시설	강금남 (054-858-8870)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실종장애인	130	경상북도
경남 3 (2/1)	동보원	아동 양육시설	유성애 (055-282-6434)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66	실종아동	62	창원시 등 9개 시군
	진주기독교아원	아동 양육시설	김지수 (055-746-3622)	진주시 진양호로 145번길 11-3	실종아동	75	진주시 등 9개 시군
	무궁애학원	장애인 생활시설	박민현 (055-382-9896)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69	실종장애인	90	경상남도
제주 1 (1/0)	제남아동센터	아동 양육시설	이상준 (064-739-1020)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83-11	실종아동	80	서귀포시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 행 월 : 2020년 9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